

2014년도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문화진흥회 · 한국방송공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일시 2014년10월24일(금)

장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14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조해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출석대상 기관증인 중에서 조대현 KBS 사장은 마카오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총회 참석 관계로 금동수 KBS 부사장이 사장을 대신해서 출석했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기관증인 선서는 서면에 의한 증인 선서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대리 조해진** 최민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최민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 KBS 국감 때 제가 KBS 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그래서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금액 사용방법 사용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자료 달라고 했고 홍문종 위원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추가 질의 전까지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해당기관에서는 자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 방통위원장님, 지난번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지원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또 지역방송사에 대한 광고매출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여러 여야 위원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결국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광고매출에 관한 문제 역시 방문진 국감에서 지역 MBC에 대한 광고매출 배분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방문진은 사실은 지역MBC의 어려움에 동의하면서도 문제의 여건을 전반적인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돌리는 등 서울MBC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 즉 말해서 지역방송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집행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방통위 특히 위원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죽했으면, 우리 여야 간에 참여하게 대립된 상황에서도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방송지원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단순히 이렇게 선언적인 법이 아니고 살아 숨 쉬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문화와 또 지역의 보편적인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방송을 위한 예산의 증액 그리고 광고매출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오늘 다시 한 번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역방송지원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적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재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매출 배분기준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의 자율합의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또 기준 자체가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미디어랩 승인해 줄 때 제출했던 배분의 원칙을 지키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상파 재전송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굉장히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2011년 12년에 지상파 송출이 여러 차례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고 금년 또 모바일 IPTV의 월드컵 송출 중단 사태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전송료와 관련해서는 지상파와 IPTV 간에도 계약 갱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지상파와 MSO 간에도 금년 말에 집중적으로 만료가 되는데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 물론 전임 위원장들 때입니다만 방송분쟁 해결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언제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방송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직권조정 재정제도 말씀하신 걸로……

○**장병완 위원** 작년 9월이었습니다. 작년 9월이었는데, 그러니까 입법예고한 지 이미 1년이 넘

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들이 선임된 이후 개정안의 국회 제출 등 개정 추진이 사실상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을 죽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까지 통과가 됐고 곧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을 의결을 하려고 지금 마지막 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동안에 방통위 스스로 자체적으로도 의견수렴을 많이 했었고 또 입법예고한 후에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금년 3월에 마쳤단 말입니다.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무엇인지 도대체가, 지금 현재 분쟁해결제도 중에서 방통위의 직권조정 그리고 재정제도의 신설, 방송프로그램의 재개명령권 신설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지금 방통위 내부에서 아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직권조정이나 방송 유지·재개 명령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재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곧 마무리를 해서 신속하게 개정안을 법제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위원장님께서 워낙 오랜 법조 생활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조정제도만 가지고는 당사자가 이것을 수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를 하셔서 방송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1월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11월 중에도요? 그걸 확실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학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학봉 위원** 구미시감의 심학봉입니다.

위원장님, 지난 국감 때 제가 문제제기도 했지만 광개토플랜 2.0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와 법령 미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 미래부가 통신용으로 구상하고 있는 40MHz 주파수 할당 그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회에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 사이에 정책협의회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우선 광개토플랜 2.0 그걸 만들 당시에 방송사 쪽에서 연구반에 참여를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심학봉 위원** 알아보시면, 방송사와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주파수 배정문제에 방송사는 배제한 채 재난통신이나 차세대방송 ITS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이 됐다는 거지요. 이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광개토플랜이 의결되고 난 다음에 거의 3년 동안 고시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절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광개토플랜에는 정책적 의지만 담겨 있는 것이지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비록 방통위에서 한 것이지만 의결해 놓은 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심학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위원장님도 법조인 하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행정행위를 했다라도 그것이 고시를 통해서 관보에 게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거는 맞습니다. 아직 그 절차는 없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런데 고시도 안 했고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효력을 발생할 시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행정부 내에서 의결만 해 놓은 상황이지 법적으로 국민들한테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직 정식으로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심학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0MHz는 전파법상 주파수배분표에 방송용으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송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라는 말이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방송위원회가 이 700MHz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주도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미래부와 협의해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논리를 가지고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학봉 위원** 그래서 국감이 끝나면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정부안으로 통일된 안을 가져오든 어쨌든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학봉 위원** 왜냐하면 미래부장관님께서도 국회 동의 절차로 해서 국민들 합의를 통해서 40MHz를 통신용으로 할 건지 UHD로 할 건지 이걸 결정하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광개토플랜에 있어서 40MHz 통신용으로 배정할 당시에 주파수배정표에 보면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방 20MHz 부분에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이미 할당돼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심학봉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2008년도까지만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무선마이크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노래방 같은 데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인데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회수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부에서 회수를 못 한 상황에서 주파수배정표를 하방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광개토플랜 2.0을 3.0 정도로 수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 사용자에게 엄청난 혼선을 초래하고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지요. 정부가 주파수배정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당시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 만약에 통신용으로 사용을 할 거라면 무선마이크 부분은 다른 곳에 주파수를 설정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학봉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선마이크 부분 2008년도에 회수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자료 입수를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런데 2020년까지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놓고 통신용으로 하위주파수 20MHz를 이렇게 겹치게 배정한다 이것은 엄청난 파란일 거라는 거지요. 방통위에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러면 이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통신용을 떠나서 라도? 아니, 주파수에 대해서 조금만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 같으면, 이렇게 혼선되게 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도 그 부분 대역은 통신용으로 사용하건 방송용으로 사용을 하건 당장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선마이크가 옮겨 갈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러니까 무선마이크 주파수가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 놓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여기 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치입니다. 이걸 다음 주 월요일 날 종합 감사할 때 방통위에서 입장을 좀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 다음 월요일까지

는 미래부하고 협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가능한 한 빨리……

○심학봉 위원 아니, 미래부하고 협의한 내용 말고요 이렇게 겹치게 배정하는데 다른 문제점이걸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문제점이요? 예,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의견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래서 지금 700MHz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마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에서 미래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사들이 비공식적으로 밝히는 얘기에 따르면 700MHz대보다는 오히려 2GHz대 주파수 할당받기를 더 원하고 있고 또 2020년 정도가 되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해진 추가질의 안 하십니까?

○심학봉 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2020년 정도가 되면 지금 5기가 5G 시대가 온다 그러지요. 그때 되면 700MHz대 주파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동통신사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개토플랜 2.0이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광개토플랜 3.0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서 통신사와 방송사 그리고 재난통신망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재난통신망 20MHz 이것도 자칫하면 UHD와 통신용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재난통신망도 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하여간 재난통신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학봉 위원 재난통신망이 시급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난통신망 대역이 700MHz대역이기 때문에 UHD와 그리고 통신용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주과수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미래부하고 협의할 때 통신과 방송이 각자 최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학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심학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존경하는 심학봉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정리를 하고 가지요.

먼저 지금 재난망은 명분이 매우 강하고 당위적인 망이지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난망을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 700MHz대역에서 재난망을 일종의 알박기하는 식으로 해서 지상파의 UHD 서비스를 불가하게 하고 그리고 재난망 알박기에 통해서 나머지 주파수 대역을 사실은 통신 3사에 고가로 경매로 팔기 위한 그런 작전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고 이와 같은 작전을 15일 날 실행할 예정이었는데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해서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주파수……

○**전병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심학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 주파수는 소위 말해서 고주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700MHz대가 5G라는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으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 주파수는 지금 2.6GHz 부분에 통신망이 3사가 서비스할 정도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고 700MHz대역은 재난망과 그리고 방송 3사에, 지상파 방송사의 UHD 서비스망으로 배분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UHD 서비스는 향후 우리 소위 영상 콘텐츠의 고품질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의 잠재적 확장성을 판단한다면 700MHz대역은 재난망과

지상파 방송사의 UHD 서비스 채널로 분리를 해 주고 그리고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으로는 고주파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상파 UHD 방송은 필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미래부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리고 지난 13일과 14일 미래부와 방통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소위 통신비용 부담 인하의 만능 미다스 법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호도해 왔던 단통법 시행이 사실상 분리공시 실패, 그리고 고가 단말기에 대한 여전한 문제, 그리고 오히려 보조금이 더 줄어드는 문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통신요금 이용을 떨어뜨릴 것으로 판단을 했던 단통법이 이른바 전 국민 호갱법으로 비판이 확산되니까 부랴부랴 17일 날 최양희 미래부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조사와 그리고 통신사 3사 고위관계자를 불러서 긴급회의를 가졌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회의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단통법을 주관하고 시행을 했던 분들은, 또 기획을 했던 분들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을 사실상 만들다시피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현대화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병헌 위원** 그래 놓고서 그 부작용과 잘못을 온통 민간 통신 3사와 제조사에만 떠넘기는 이와 같은 태도는 완전히 방귀 편 사람이 성내는 식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의 소위 말해서 관치경제 시대도 아닌데 거의 이것은, 제가 이러한 기사를 죽 보면서 도대체 이게 경제까지도 군사독재 시절의 관치경제로 되돌아간 것인가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당국자가 이와 같이 단통법에 대한 이른바 수요와

현실적 적용의 효과에 대해서 예측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업계와 정부 간의 서로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소위 민간 기업들을 불러다가 놓고서 거의 반 협박성 발언과 억박지르기성 회의를 통해서 모든 책임을 다 소위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게 떠넘기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부 표현에 관한 보도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날 모임의 취지는 무슨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든지 또는 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넘기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의 분위기나 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사실상 책임 전가와 강압적인 그런 후속대책 내지는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강압하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은 사실상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와 같은 관치경제적 마인드가 결국은 자꾸만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관치경제적 요소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특히 통신시장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 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호갱으로 바꾸어 놓은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조급하고 성급한 선부른 정책 시행에 대해서 저는 미래부장관과 함께 방통위원장께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날 모임은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법의 원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좀 지체되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또 판매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전병헌 위원** 우선 제 얘기는 민간 기업과의 관계 그것은 두 번째고 일단 매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일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시행 과정이라든

지 또는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반성을 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대리 조해진** 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서울시 강동구를 지역구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이재영 위원입니다.

박효종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이재영 위원** 제가 첫날 지적했던 다음의 미즈넷에 관련해서 유해성 콘텐츠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이재영 위원** 방심위에서 저한테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권고결정을 하셨어요. 굉장히 낮은 수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래서 우리가……

○**이재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미즈넷과 같은 이런 것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말하자면 유해매체성이……

○**이재영 위원** 낮은 수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다만 문제는 그 매체 자체를, 그러니까 미즈넷 자체를 우리가 유해매체다 이렇게 그야말로 얘기하기에는……

○**이재영 위원** 내용은 안 보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유해매체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용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수 아니에요? 그때 다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렇지만 그게 70% 정도……

○**이재영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 내려간 다음에 미즈넷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이재영 위원** 권고사항이 내려간 후에 다음 미즈넷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오늘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은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권고조치라고 해서……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했을 때 오늘 들어가서……

제 질문에 대답 좀 해 주세요. 미즈넷에 들어가 보셨어요, 오늘 실무진 쪽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오늘은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늘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전혀 바뀌게 없어요. 토씨 하나 바뀌게 없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우리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심의 활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고칠 수 있도록 권고해 내렸는데 아무런 시정조치가 안 되었다면 방심위에서 아무리 권고조치해 봤자 이게 소위 말해서 안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재영 위원** 이것 행정적으로 무슨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단 먼저 방심위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따르지 않았을 때……

○**이재영 위원**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치에 대한 반응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문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어야지……

○**이재영 위원** 시간적인 여유라는 것은 사이트 내리면 되지 무슨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그 사이트 전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재영 위원** 그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이트를 제대로 그때 제가 지적한 이후에 들어가서 보신 적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봤습니다. 들어가서……

○**이재영 위원** 봤으면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금 유해성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봤는데 그것이 청소년한테는 당연히 유해물이라는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유해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때까지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지금……

○**이재영 위원** 일부 성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은 유해매체 콘텐츠에 계속해서 무방비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하고 얘기해서 다음이 우선 그 부분은 성인인증을 하는 쪽으로……

○**이재영 위원** 방심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사이트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버 공간상 모든 대형 포털들뿐만 아니고 상당수가 이런 콘텐츠가 무방비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는 게 답변이네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누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까?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떻게 모니터링 강화시킬 거고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권고조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재영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즈넷은 아주 극히 일부의 예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인터넷 공간에 이런 유해매체, 유해사이트·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속 시원한 답변이 안 왔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러니까 속 시원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해매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유통되는 정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참 많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로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일단 기회를 주고……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진짜 답답하시네요. 저 아주 간단한 질문 드렸어요, 아주 간단한 질문. 우리 사이버공간이 이런 유해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고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이런 콘텐츠를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방심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를 대답을 듣고 싶은데 뭐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답변만 계속 하고 계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제가 안 된다고 말씀……

○**이재영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된다’ ‘된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니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재영 위원** 뭐 이렇게 변명이 많으세요?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온 답변하고 똑같아요.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재영 위원** 교수님이 되셔 가지고 말장난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닙니다, 방심위가, 우리 심의위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영 위원** 아니, 모니터링 기능은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모니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재영 위원** 그것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줄줄이 답변이 기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니, 모니터링 기능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이재영 위원** 그 예산 관련된 문제는요, 위원장님, 대한민국 어느 부처에 가나 똑같은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 문제는 그렇지만 인정을 해 주셔야……

○**이재영 위원** 앞으로 계속 그 말씀만 하시다가 그만두시려고요? 예산 문제 있고 인력 문제 있으니까 앞으로 못 하겠다? 그러면 국감 왜 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니 위원님,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가……

○**이재영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은 우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도 자식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손자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직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생기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재영 위원** 계속 이런 유해콘텐츠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무 무방비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놔두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재영 위원** 모니터링뿐만 아니고,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이버공간에서 없애실 거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워낙 많은 부분이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완전히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영 위원** 그러면 틀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틀은……

○**이재영 위원** 어떤 틀이 필요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털 자체의 자율규제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과 외부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찾아서 못 하도록 하는……

○**이재영 위원**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려면 무슨 틀을 마련해야 돼요? 법이 개정돼야 됩니까? 정보통신망이 무슨 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찾아내게 되면 적절한 조치는 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워낙 많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준 위원** 서울 중구의 정호준입니다.

방통위원장님, 검찰의 다음카카오톡 온라인 사찰을 계기로 우리 온 국민이 개인정보의 침해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온라인이나 ICT 분야의 국민과 또 우리 개인의 정보보호를 앞으로 계속 해 주셔야 할 주무부처로서 위원장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인정보 보호는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지적을 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카카오톡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를 통해서요. 그만큼 개인정보의 침해가 되는 것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SK플래닛이나 KT 그다음에 국민내비 ‘김기사’ 이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회사들이 유병언 수사 때 검찰에 특정 장소를 검색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제공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회사들이 개인들의 목적

지와 출발지 검색정보와 실시간의 주행정보 등 개인들의 위치정보를 길게는 1년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해서는 1개월 내지 3개월 그다음에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4일 정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판단컨대는 과연 그런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정호준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그동안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회사들이 정책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문제는 그동안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회사들이 고객들의 이런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 및 주행정보들을 위치정보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들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인정보수집 동의만 얻고 위치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위치정보 수집 고객들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위치정보 보호법에 위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률적인 검토는 저희가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보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약관은 3개월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약관도 고치고 하는 그런 후속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준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카카오톡 문제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SK플래닛은 ‘T MAP’을 통해 보관하던 개인정보 그리고 방금 말씀한 고객 출발지 이런 정보들을 1년에서 30일로 바꾸었고요. 또 주행관련 정보를 7일에서 4일로 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내비 ‘김기사’도 보면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의 저장된 전화번호는 앞으로 다 삭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위치 로그 저장 기간

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김기사’ 서비스는 전화번호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 로그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기관에 이런 것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해도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그런데 하여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들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수집하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보관기간들이 거의 다 상이합니다.

물론 최근에 알아서 이렇게 정책들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보관하는 정보들이 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아까 법률 검토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좀 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만약 해당한다면 개인들의 위치 정보 수집과 동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침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동의에 관한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이것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방통위원장, 지난 KBS 국감 때 이인호 이사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 혹시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직접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그 내용을……

○정호준 위원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보고받았습니다.

○정호준 위원 본 위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그때 이인호 이사장님의 답변에 너무 충격을 얻었습니다. 그중에 또 논란 것은 백범김구선생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범선생님께서 반대한 것은 사실은 독립이 아니고 분단이었다는 것은 우리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인데 이렇게 참 어이없는 대답을 하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장이 상식과 사실에 맞지 않은 이런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여과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장을 계속 하고 또 본인의 이런 역사적 편향적인 생각을 전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강연도 계속 하시겠다 이런 대답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편향된 역사왜곡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이사장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마땅히 경고를 하고 또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은 역사학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과거의 경력이나 활동상황 등에 비추어서 그런 당신의 역사관이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와 관계없이 KBS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사장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과거에 학자로서, 교수로서의 어떤 역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본인이 편향된 그런 역사인식을 앞으로도 강연을 하고 멈추지 않겠다, 이것을 국민 앞에서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정말 최고 의사결정구조의 장으로서 적합한지, 국민들은 이미 그 뒤에 많은 여론과 인터넷 신문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경고를 안 하고…… 앞으로는 적어도 이사장 하는 동안만큼은 이렇게 편향된 역사관을 국민들 앞에서 하지 않게끔 경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치를 취하시고 대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사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으시고 유념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외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정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은희 위원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단통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통법을 시행하기 전에 2014년에 나타난 우리 이동통신시장의 문제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불법보조금 대란인데요. 1월 23일 날 온라인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이 풀리면 서 경쟁사 간에 과열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때 기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브레이크 없는 보조금경쟁’ ‘단속 비웃으면서 심야에 잠깐 팔아’ ‘일반 고객에게 비용 떠넘기는 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1대란, ‘아이폰’ ‘S5’ 공짜, ‘캘럭시노트3’ 공짜, 새벽 3시에 수백 명이 이 추운 겨울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6·9대란, 이통사들이 사업정지 이후에 안정화 추세에서 온라인에서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주는 일이 6월 9일 날 있었는데요. ‘방통위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통사 최대 110만 원의 보조금 지급’,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온라인에서 현금 지급하는 것을 미끼로 해서페이백으로 고객을 모집한 후에 먹튀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비공개 카페에서 약 2만 명 가입자를 모집하고 150억 원의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사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이 많이 증가를 했었고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기타 ‘폰테크족’이라는 새로운 말도 생겨났는데요. 일단 A 통신사에 들어서 번호이동 제한 3개월 후에 다시 B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이런 건들이 최근에 1022%가 증가를 했습니다.

단통법 전에 이런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통 3사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은 2012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서 한 20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받았습니 다. 단말기 유통법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를 해서 이런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단통법은 이런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행태를 근절하자라는 취지로 실시를 했는데요. 이용자 차별 문제를 또 해소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공여지책으로 실시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고객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실시를 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단말기 보조금을 적게 태워서 도리어 통신비가 높아졌다, 지난번 우리 본 감사 때 제가 4.3%가 높아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최근에 각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원활한 협조하에 지금 지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온 갤럭시노트4의 경우에 최상한인 보조금을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와 같이 변경이 된 것은 며칠 전에 SKT가 22만 원으로 올리니까 서로 이통사 간의 그런 정상적인 경쟁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은희 위원 이동통신사들은 정해진 34만 원의 범위 이내에서 적정 보조금, 이전에 그렇게 100만 원씩 과하게 줬던 보조금이 아니라 평균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몇 가지 지표가 변화된 게 있는데요. 일단은 고가 요금제 가입비율이 31%에서 9%로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결국은 그 가입자들한테 고가 요금제를 강요를 했던 거지요. 8만 5000원 이상짜리 요금제를 강요를 했었는데 이 요금제 가입비율이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단말기 가입비중도 기존 4.2%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에 10.3%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패를 논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전과 같이 보조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부 국민들이 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모두 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보조금은 줘야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렵더라도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 경쟁으로 유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에 우리가 최대 12% 요금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은희 위원 그런데 이 요금 할인 상한을 조금 더 높이든지 아니면 이것을 풀어서 자급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통 3사가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인위적으로 어느 쪽 하나를 완화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

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요금 할인 경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통 3사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요금을 서로 경쟁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미래부장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장의 요금 경쟁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제도가 빨리 안착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감기약을 먹었더니 어지럽네요.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저는 정부 부처가 정책 실패를 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잘못 되었다거나 그리고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거나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홍보 때문에 실패했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급하다고 하는 것,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과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하려다가 못 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분리공시가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 불만이 이렇게 높았을까요? 특정 기업의 로비 받아서 정말 판이 엉망이 됐다 이런 얘기 할까요?

그래서 저는 법제처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12조1항의 단서 조항 그리고 3조2항,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는 조항들은 애초 단통법 취지대로 빨리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을 이렇게 자꾸 바보로 취

급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통신사들, 제조사들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단통법 시행되고 보조금 3~9만 원 주다가 지금 방통위원장, 미래부장관이 나서서 막 특단의 대책 말씀하시니까 이제 10~20만 원 줘 보겠다, 이게 국민을 거지로 아는 겁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제가 그냥 이 주파수 문제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게요.

UHD를 하기 위해서 700MHz 주파수 대역 외에 다른 대안 있습니까? UHD TV를 다른 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대역 중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최민희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완벽한 구현을 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700MHz 말고 또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일부, 저희가 주파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지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또 어마어마한 장비 교체라든지 그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보면 700MHz 대역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또 국민들께서 헛갈리실 것 같은데, 다시 여쭙게요.

700MHz 주파수 대역 이것 아날로그 방송 회수한 대역이잖아요. 이 대역 외에 UHD TV를 완벽하게 전국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다른 주파수를 찾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재로서는……

○최민희 위원 못 찾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못 찾았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재난망 20MHz 정도를 찾아야 되는데, 재난망의 경우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끊기지 않는 재난망 대역을 다른 주파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도 700MHz밖에 없다고 합니다.

○최민희 위원 예,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광개토 플랜 2.0에서 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방통위가 게으르다는 겁니다. 이 논란이 언제부터인데요. 게다가 위원장님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결위원할 때, 올 봄에 예결위 결산 때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700MHz 이 대역, UHD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빼라고 그때부터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대역을 학계와 여러 곳에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으로 진화해야 된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심학봉 위원이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진화해야 되고, 오히려 700MHz 저주파 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6GHz 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UHD TV나 재난망은 700MHz 대역밖에 못 해요. 통신은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시 이번에 자료 보면서 또 되게 섭섭했던 게,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방송 플랜입니까? 통신 플랜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지금 방송 주파수 플랜, 방통위에서 장기적으로 계획 짜신 것 있습니까? 지금 UHD가 끝일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앞으로도, 그러니까 UHD로 옮겨 가게 되면……

○최민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짠 것 있으시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현재로 짠 건 없습니다마는 UHD……

○최민희 위원 짜셔야지요. 왜 늘 이렇게 미래부나 통신 쪽에서 통신 주파수 짜고 나면 뒤쫓아가면서 일을 하십니까?

이것 짜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저 계속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방송은 대한민국이 5000년 계속 가면 5000년 동안 방송 있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콘텐츠 무시하고 가는 이런 정책 성공 못 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할 거거든요.

주파수 더 찾아볼게요. 방통위가 같이 찾자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도 지상파 UHD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그리고요, 저는 혹시 국민들께 오해가 있을까 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요, 정확히 이인호 KBS 이사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어저께는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했기 때문에 공로자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건국훈장을 받으셨어요, 대한민국 건국훈장. 누구 누구와 같이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승만 대통령, 김좌진,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선생 등 30명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것 언제 수여받으셨는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민희 위원 이게요, 1962년에 받으신 거예요. 1962년이면 누가 대통령일 때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5·16 이후라고……
○최민희 위원 5·16 이후입니다.

이것 이렇게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해도 그렇다고 김구 선생님을 폄하하면서 존경하는 이 자세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냐, 공영방송 이사장이 그런 국민 전반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을 공개 강연하는 게 맞느냐, 그러냐가 어제 KBS 때 쟁점이었습니다. 공개 강연하는 게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받기로는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유념해서 행동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민희 위원 그건 부적절하다는 뜻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그 부분은 이사장

께서 당연히 이사장으로서의 지위하고 관련해서 적절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답답해 죽겠어요. 부적절하다는 뜻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적절, 부적절을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최민희 위원 판단하셔야지요. 방통위원장님이 시잖아요.

부적절하다는 뜻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판단할……

○최민희 위원 그러면 계속 공개 강연해도 돼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그것은 이사장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최민희 위원 이따가 또 밀당해 보지요.
.....

○위원장대리 조해진 최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박효종 방송심의위원장님, 지난번 국감 때 성인 PP사업자가 문제돼서 지역에 대해서 접근 제한조치해서 감사드리고요.

구글이 유럽 사용자들이 유해물에 대해서 삭제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유럽 사이트에서만 보이지 않게 조치한 걸 알고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유럽 시민단체의 요구는 들어주고 지난번 방심위가 구글에 음란물 및 청유물 등의 정보에 대해서 삭제 차단을 요청했을 때는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일단 구글은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해당 불법 정보가 있다면 국내에서의 접속은 물론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는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래서 물론 해외 구글에 대해서는 삭제요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길부 위원** 우리 국내만이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국내에서는, 구글 자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거기서 나오는 불법 정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삭제요구도 합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실제 국내 포털에서는 음란물이 노출되거나 청유물이 별도 확인 없이 노출되면 형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비해서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조해진 간사,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강길부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명확히 해 놓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 점에 있어서 사실 형평성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심으로는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그런 제재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해외사업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이 부분은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확실한 논리를 정립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글로벌 환경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가 간의 협약 이 부분까지 줄고민을 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다음에는 공익광고 시청자 노출 높이는 문제 코바코 국감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상파 3사 전체 공익광고의 약 87% 정도가 B시급이나 C시급에 방영돼 있기 때문에 SA나 A시급 정도로 공익광고 노출을 많이 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익광고가 보통 잘 보이지 않는 시간대에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SA급이나 A급 시간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도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SA급 같은 데서 방송을 하게 되면 시간을 가점을 줘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유도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UHD TV 서비스 도입을 밝히셨는데 논의가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는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최근 지상파 UHD 방송기술 표준안을 잠정표준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잠정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정식표준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잠정표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게 뭐 1년 동안만이라든지 이런 시한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시한은 없습니다. 아직 기술발달 추세에 따른 정식표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잠정표준으로 정해 놓은 것이어서 계속 잠정표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UHD 방송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우리도 일본을 추격하는 모양새로 봐도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본은 지금 UHD 지상파 방송을 위성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추진모델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UHD 방송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고 서로 경쟁자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럽식 모델을 도입해서 UHD 기술표준을 만들어 가면, 기술표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UHD TV와 관련된 전자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기술표준이

정해져야지 UHD TV 수상기도 그 기술표준에 맞게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연관 산업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방송표준을 빨리 확립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표준에는 민간표준과 국가표준이 있습니다. 지금 TTA에서 정한 것은 일단 민간표준을 정한 것이고요 또 국가표준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결정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국제적인 동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게 표준이 정해지고 수상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뒤에 배석하신 분들 좀 더우시지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상의 탈의하고 넥타이 푸시는 것까지, 너무 더워서 고생들 하시는데 또 조시면 지적받으실까 봐. 앞줄에 계신 분들은 그냥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하도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양이 좀 깁니다.

먼저 본 위원이 22일 KBS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 요청했더니 3장 요약본만 주셨어요. 그런데 전문 제출이 어려운 사유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연구진의 동의 양해를 받아야 된다, KBS 내부 참고자료기 때문에 또 연구의 독창성 접근방법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전문공개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나오시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4조를 보면 직무상 비밀이라도 공개 제출하게 돼 있어요. 다만 국가기밀이고 또 소관 부서장, 여기서서는 아마 방통위원장님 같아요, 미래부장관님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소명을 하셔야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원장님 소명 안 한 것 같고 국가기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됩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직원문책 및 징계현황,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적시해서 제출하랬더니 이 건 뭐 시간을 자꾸 막 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 9월 5일 감봉 3월에 해당하는 징계 관련 보관서류 목록을 작성 후 그 목록에 적시된 자료를 개인정보 삭제한 후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징계요구 문서량 징계회부서가 누락이 됐어요. 그다음에 별첨이 뭐냐 하면 게시판에 게시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글인데 이게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첨까지 제출해 주시고.

방문진 이사장님께는요 방문진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국감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건 주지 않고 대신에 법률 자문받은 내용을 주셨어요. 그런데 법률 자문 결론을 봐도, 법률 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유로 제출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출 안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2시간 내로 제출해 주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원식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제가 요청하면 법 거부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님, 이게 국가기밀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지금 이사장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국가기밀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러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선 시간을, 어제 저녁에 그걸 냈고요.....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시간을.....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누구하고 만났나, 가게이름 이런 것은 제가.....

○위원장대리 우상호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두 분이 공방전을 벌이실 일은 아니고. 방문진 이사장님, 이 자료 요청은 이미 지난 번 회의 때도 논점이 됐던 내용이지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궁색하게 하지는 마시고 주시지요. 그리고 안 주시면 나중에 고발당하세요. 그렇게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인천 계양을의 최원식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종편이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하다, 미흡하다 이런 여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여론인지 모르지만 그런 보도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지난 8월 달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시정명령한 부분에 대한……

○**최원식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종편 및 보도PP 콘텐츠 투자실적이 미비하고 재방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형식상은 패소로 났지만 그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재방비율은 전부다 한 20% 초과했다는 것 지적이 된 건 맞고,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 미이행 금액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라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 사업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사업 계획서상의 콘텐츠 투자금액의 이행은 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사업 계획서상의 2012년 콘텐츠 투자 미이행 금액과 2013년 콘텐츠 투자금액을 이행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 여기 보면 재미있는데 여태까지 종편에서 수익구조 납입자본금 재무구조 사업환경의 변화로 투자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종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여쭙 볼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종편이 이렇게 사업계획서상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종편의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하여간 사업승인을 받을 때 결국은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된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대로 못 했으니까……

○**최원식 위원** 그리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약속한 것 중에서 몇 % 이행했습니까, 대략이라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굉장히 적은 퍼센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제가 보기에 50%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지요? 어찌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누적되고 있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지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승인 계획서나 재승인 계획서를 검토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행하겠다고 제대로 약속하는지, 그것 믿고서 승인시켜 주었는지 재승인시켜 주었는지 그게 의심이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그래요.

두 번째, 시정명령을 내리실 때도 앞으로 방송환경을 생각해서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에 상응한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했는지도 지금 사실 의문이 갑니다.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시정명령의 형태나 시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패소판결을 받고도 개선할 점, 특히 방통위 의지도 저는 좀 의혹이 가요. 속기록을 보니까 판결에 대해서 불평만 하시고 현실적으로 이걸 고치기 위한 시정명령을 어떻게 내려야겠는지 그다음에 자체점검 향후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흔적이 안 보이고 변호사 인력 2명을 채용해서 앞으로 재송이 일어나면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후약방문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방통위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약속했다면 취소 사유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심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지금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말씀은 매년 똑같이 하셨어요. 저도 이게 벌써 세 번째 묻는 거거든요. 지난번

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전 방통위원장님한테도 똑같이 세 번째 질문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투자 미이행 금액 계속 늘어납니다. 재방비를 매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종편 콘텐츠 불만이 많고.

이 정도 되면 과징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를 의심해야 되고 과연 지킬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재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이 엄격히 생각하신 다음에 과감한 조치를 내리셔야지 다음에 또,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올해 콘텐츠 투자 이행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상황을……

○**최원식 위원** 아니, 점검 안 해 보셨어요? 중간점검 안 해 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중간점검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올해 이행이 안 되면 취소시킬 생각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바로 그렇게 취소를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정을 명하고 그다음에 그 시정명령이 안 지켜지면……

○**최원식 위원** 아니,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내렸는데도 계속 재탕 삼탕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과거의 그런 사례하고 합쳐 가지고 소위 가중 여부를 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제는 종편뿐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님의 의지나 국민에 대한 약속도 믿기가 어려운 실정까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사실 저 판결에 대해서 저게 지금 콘텐츠 투자계획 시정명령과 재방시정명령 2개가 합쳐져 있는데요……

○**최원식 위원** 법률적인 구조도 저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시된 내용에 인정한 사실만 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려는 건데……

○**최원식 위원**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매년 이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적되고 있고. 그러면 의지를 갖고 고치셔야 되는데 지금 과징금 가지고는 고쳐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수술할 의지나 그런 각오를 밝히시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지, 그런데 똑같이 그냥

그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믿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각오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최원식 위원** 각오를 얘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우선 저 시정명령에 관해서도 사실은 2개가 지금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그걸 분리해 가지고 중간에라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법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건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콘텐츠 투자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걸 분리시킨다는데 분리시킨다는 데 의미가 없어요. 분리시키면 이행합니까? 이행할 거라고 믿으세요? 분리해서 심사하시고 과징금 2배로 때린다고 이행할 것 같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게 아니고, 저 판결이 시정명령이……

○**최원식 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서 임시적인 조치한다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

○**최원식 위원**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근본적인 것은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내년에 자료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원식 위원**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취소를 할지 말지를 검토하시는 게 위원장님의 자세인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자세.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에서 취소 운운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최원식 위원** 최소한 재승인시킬 때는, 사업계획서가 때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재승인시켰으면 방통위원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이행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면 큰 결심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단언하건대 올해 안 지킵니다. 한번 약속할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하여간 내년에 조사를 할 때 조치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주파수 문제 관련해서 재난망 또 통신망 UHD 방송망 어느 하나 우리 산업이나 또 국민생활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셋 다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700MHz대 주파수가 방송한테는 황금 주파수이지만 통신한테는 꼭 그렇지도 않다, 통신사들이 오히려 고주파 대역의 주파수를 더 선호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게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해법일 수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통신사들의 입장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의 입장이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또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세 영역이 다 필요한 주파수를 갖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통신사들이 700MHz대역보다도 고주파 대역을 더 선호한다는 게 맞다면 남는 것은 이제 정부가 이미 한 번 정한 적이 있었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정하는 문제가 남는데 지금 말씀드린 통신사들이 고주파 대역을 선호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정하는 문제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수정하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미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해진 위원** 그게 제가 듣기에는 미래부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물론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심학봉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광개토 플랜 2.0이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것이 맞다면 거기에 구속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문

제를 쉽게 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구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 정책협의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실제로는 통신사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최민희 위원님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셨는데 세 영역이 다 필요한 좋은 주파수를 갖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했다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단말기 유통법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일부 시장의 격한 반응이 있어서 언론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2주차 말, 3주차 초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법적인 효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값비싼 프리미엄 단말기만 고집하지 않고 그것에 연동된 고액요금제에 매이지 않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을 쫓아서, 또 가게의 여력에 맞게 중저가폰 또 자급폰을 많이 선호하고 또 저가요금제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반응이 소비자에서부터 먼저 그런 합리적 선택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청신호였고 그것에 연동되어서 또 기업들이 다양한 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요금인하 대책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말기 가격 인하도 발표하고 있고 보조금도 조금씩 올려 가고 있고 이제 기업 측에서 그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순기능적으로 적응해 가게 되면 결국은, 저는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보면 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안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장이 완전 안착될 때까지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모니터를 하시면서 변동이 생기면 바로 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분리공시가 또 논란이 되는데 당초에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법을 초안을

잡을 때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분리공시제도가 주는 산업에 대한 부담이 큰 반면에 분리공시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조금공시제도라든지 또 분리요금제라든지 또 긴급중지명령제라든지 이런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서 이것들만 잘 운영을 해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분리공시 도입을 유보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으로 가서 빠른 시일 안에 시장이 정착되고 안정이 되면 산업계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분리공시를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에 정말 가정의 가정이지만 시장이 끝까지 안정이 못 되고 제도가 안착이 못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제조사들의 이런 변칙적인 장려금 운용행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인 분석이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분리공시를 도입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그에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도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다시 이것을 재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시장이 안정되고 새로운 합리적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과 또 유통망과 소비자들, 거기에 다 적응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은 우선 시장상황을 당분간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셨듯이 현재 상황하에서도 원래 단말기 유통법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했던 가계통신비 인하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다시 혼란을 주면서 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 제도 개선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홍의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난 14일 방통위 국감 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방발기금 징수율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결정한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방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역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역방송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재정상태가 어떤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78% 인가 일률적인 방발기금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매출액에 따라서, 또 같은 매출액 범위 내일지라도 재정상황이 어디는 적자일 수도 있고 흑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흑자에 따라서 비율을 좀 달리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현실에 맞게 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어떻게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역방송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리고 지금 단통법 논란에 관해서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논란은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통점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생각해 볼 때 국회부터 고민과 반성이, 물론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청부입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입법권은 분명히 국회에 있고 정부의 입법은 의원입법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취지도 다르고 정부는 정부가 입법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의원은 의원입법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입법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되고 논의된다면 심의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어서 제2, 제3의 단통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청부입법을 방지하고 당해연도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장관이 소명하도록 그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14일 국감에서 여야를 떠나서 단통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그리고 난 뒤에 위원장님하고 미래부장관하고 17일 이통 3사 CEO 및 삼성·LG 전자 CEO들과 만났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만나서 그날 방통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발전할 수 없다’ ‘소비자와 상인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만을 따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그런데 10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효과,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 말씀하셨고 지난 14, 15일 국감에서도 미래부장관과 방통위원장님은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좀 더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것은 입장이 조금 변했는데 또 조금 전에는 지켜봐 달라고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 질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이 조금씩 조금씩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것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일관된 생각은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적정한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법은 조금 특이한 것이 모든 국민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국민이 하루하루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만약에 소비자 국민들이나 또는 유통점에 큰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중간에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홍의락 위원 22일, 23일에 SK나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단통법 후속대책을 좀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보조금 인상 및 출고가 인하 등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번 이런 대책은 사실은 단통법이 시행되지 않아도 내놓을 수 있는 시행들 아닌가요, 지금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내놓은 시행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전에 계속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통해 가지고 이통사들이 이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홍의락 위원 지금 단발성 대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율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소비자들과 유통점들의 아우성 이것 그냥 잦아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그리고 시중에는 10월 31일 날 출시되는 ‘아이폰 6’ 때문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자구책에 지나지 않지 어떤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앞으로의 일은 저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통사들이 자기네들 자체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요금제를 낮추고 개편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또 그것을 거꾸로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의락 위원 제가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보조금 말입니다. 최대 34만 5000원까지 됐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30만 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 또 플러스 15%를 했는데 이런 보조금 비용지출 한도액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근거조항이 있었을 텐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금액에 대해서 말씀?

○홍의락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일단 상황은 저희가 이통사의 이익과 그다음에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 그다음에 유통점의 마진을 빼 가지고 그 정도로 계산을 해 낸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상한은 3년 일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아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한액을 보면 이통사·제조사로 하여금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누렸던 이익을 이통사에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요, 마케팅 비용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단통법의 문제는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관련 부서들의 안일함과 또 대기업들의, 이통사나 제조사의 탐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3년 일몰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자면…… 미래부의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금 상한을 주는 요금 단위를 좀 낮춘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저가요금제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그동안 다들 준비하신다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 오늘 종합질의입니다.

방통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아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 질의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하고 상당히 충돌되는 개념이 백브라더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김재경 위원** 치안을 강조하다 보면 온 데 CCTV를 달아 놓으면 그만큼 또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어 가지고 걱정이 되고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가치하고 충돌하고 경제도 효율성 강조하다 보면 경제력 집중이 생겨 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산재해 있는데 시장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좀 준비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는데 그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5월 달에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그러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잠정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각 단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게 다양하게 의견들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지금 만든 안은 기본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이미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비식별화를 한 상태에서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로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시민단체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비록 공개된 개인정보더라도 사전에 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수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위반되는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법의 해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애매할 때에 그것을 한 방향으로 정해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그런 의견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약간 수정을 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경 위원** 최 위원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꼼꼼히 잘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관례에 보면 이런 것 있잖아요? 알려진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것 때문에 처벌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듯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당사자는 또 다른 느낌과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좀 짚어가면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상세히 질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자료가 아마 그쪽으로 넘어갈 텐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이것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금동수 부사장님에 대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듣고 전달해 줄 내용이니깐 두 분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님은 방통위 위원장으로 된 가장 큰 이 유가 본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방송통신 분야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규제 그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저에게 바라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방송의 전문성도 없고 산업 발전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는 좀 공정하게 할 사람이다, 이런 데 점수가 높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이인호 이사장님께서 국감장에 나오셔서 가지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제가 언젠가 위원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정의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하게 보여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나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남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해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그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실패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잃은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날 나오셔서 한 발언이 옛날의 학자로서의 이인호 이사장 같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KBS라는 공공방송의 이사장으로서 말씀으로서는 이게 너무나 적나라한 거예요. 본인의 소신을 너무 여과 없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우리 국민 대다수의 주류적 의견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인호 이사장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만 해도 김구선 선생님께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건국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인호 이사장님의 그 견해는 저도 선뜻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는 그날 조금 수위 조절

이 필요했다고요.

자기 소신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게 자기 소신을 접고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학자로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이런 입장에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시오’라든지 등등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나오시기 까지,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시라 그러고 이럴 때 얼마나, 본인도 생각이 있었을 건데 그런 고민 끝에 나온 발언치고는 정말로 제가 실망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우윤근 의원하고 저하고 러시아포럼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이인호 이사장님께서 몇 번 오셨어요. 그때 빈 이인호 이사장님은 말수가 별로 없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아서 나는 솔직히 야당에서 그분을 자꾸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그럴 때 ‘아니, 옛날에 자기들 정부에서 공직도 지내고 한 분을 왜 이렇게 뻑뻑하게 저러시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는 참 그랬었는데 막상 그날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가시는 것을 보고는 실망이 컸다고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것보다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본인한테 실례가 될 것 같고 해서 이 정도 하는데 두 분이서 말씀 좀 잘 전해 주세요.

금 부사장님, 어디 가셨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인천 부평갑 문병호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이인호 이사장 추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헌법 전문에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헌법 전문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리고 김구선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자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 위원** 글썄요, 그게 저는 대체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인호 이사장께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 ‘김구선생님께서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하신 분이 바로 방통위원장님이세요. 만약에, 방통위원장님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추천하신 겁니까? 이인호 이사장께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추천하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분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개개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통위원장님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KBS 이사 추천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그런데 이사를 추천하시는 분이 그런 추천되는 사람의 생각이나 그분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추천하면 됩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분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일일이 파악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것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아니면 솔직히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의 소신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회의할 때 그런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명예훼손이다’ 그런 반론이 있어 가지고 토론을 못 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 생각에는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 위원** 김재홍 상임위원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저희 내부 문

제이기는 합시다라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면, 내부 토론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기본적인 검증도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안을 논의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주장했고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호 위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추천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그냥 이렇게 위에서 누군가의 지시라든가 또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문제는 그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분이 대단히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KBS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방금도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KBS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사 강연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KBS가 편파시비가 있고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KBS 이사장이 전국에 강연 다니면서 ‘김구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 강연하고 다니면 KBS가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유념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권자이시기도 하고 또 감독권자이시니까 방통위원장님이 한번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 사상, 그 생각 자체도 문제지만 그 생각을 KBS 이사장 자리를 기회로 해서 전파하거나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또 KBS 프로그램 제작에 그러한 자신의 역사관을 반영하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역사관이 KBS 이사회나 KBS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인호 이사장께서 그러한 KBS 이사장의 본분을 벗어난 업무집행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방통위원장께서 주의를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을 반드시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다음에 통신비 단말기 인하에 관해서 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 국감 시작할 때 저희 미래통신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서 우리 방통위원장님이나 최양희 장관께서 그래도 인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하셔서 가지고 업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분리공시가 좌절된 데 대해서 방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보조금 분리공시의 최종적인 목표는 분리공시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계통신비 인하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제도의 진행 상황을 좀 살펴봐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굳이 법을 개정하면서, 빨리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제도 개선을 다시 또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서는 법원에서 오랫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하셨고 또 고법 부장판사를 하시다가 위원장으로 오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듯이, 삼성전자나 산자부가 반대하듯이 분리공시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는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도 분리공시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단말기 유통법 12조 단서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런 다양한 해석을 검토를 한 결과 분리공시가 가능하다고 봐서 고시 안에 집어넣었던 것

입니다.

○문병호 위원 다음에 통신요금 인가제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폐지하시거나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미래부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요금 인하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단말기 값이나 통신비가 높은 이유는 결국은 독과점체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과점을 타파하고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모든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성을 갖는 제4 이동통신의 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도 미래부 업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래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방송 관련 위원회니까 제가 방송 관련 기관장님한테 또 임직원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언론이나 방송에 대해서 자율성을 많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권의 압력을 배제하고 방송이나 언론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호 추가질의 때 빼 드릴게요.

○문병호 위원 1분만 쓰고 그만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압력을 배제하고 언론의 자율성·공정성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는 가져가고 책임은 안 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율을 줬더니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나 권력에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해서 감독기관을 별도로 뒀습니다, 중간에 장치를. 그런데 감독기관이 과연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체제 자체가 뭔가 나사가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독해야 할 건 감독하지 않고 있고, 자율성을 부여받은 기관은 제멋대로 하고 있고 책임은 안

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해결책 중의 하나로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나 행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방통위원장님이나 방문진 이사장님이나 KBS 부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오보의 경우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더 많은 액수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에도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어서요.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오보들이 과연 고의적인 것인지 그런 판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해서 좀 더 그런 제재가 확실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방문진 이사장님하고 KBS 부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저희들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우리 문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못 한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위원회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제도에서 오는 한계도 있지요, 또. 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위원이 여섯 분이고 야당이 세 분이고 이런 데서 오는 갈등도 좀 있고 한데 하여튼 제가 좀 부덕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방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방송심의위원회라든가 그 외의 기타 법률적 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더 둔다면 아무래도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아 계시지만 우리 증인들 화장실도 좀 가셔야 되고 그래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영 위원**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스미싱과 스마트폰 해킹 등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스마트폰 자체에 외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불순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 기능의 다양화부터 소비자의 무분별한 사용 이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정부와 통신사의 정책,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통신사는 문자에 인증마크를 붙이는 안심마크제도 또 다른 통신사는 단어를 필터링해서 차단하는 것 또 다른 통신사는 소액결제 내역을 문자로 보내 주는 것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게 특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특별하다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지영 위원** 해야 될 일이지요?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보통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일 경우에 통신사는 약 3%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됩니다. 한 해 소액결제시장을 대략 3조만 잡아도 통신사별 대략 1000억대의 수입이 들어오는 셈인데 이러한 막대한 수입 때문에 통신사들이 스미싱 피해방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휴대폰 스미싱 사기유형과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2주 속성으로 안전한 스마트폰 만들기'라는 자료집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받으셨지요?

동 자료집을 만드는 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통신사가 파악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사례 유형과 또 예방을 위한 대안적인 자료를 준비하고자 했는데요 통신사별로 파악한 피해현황과 대안제시 등은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시간관계상 화면을 보면서 일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T입니다. KT의 콜센터로 접수되는 고객관리 시스템에 스미싱은 없어 진산추출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스미싱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스미싱이라는 항목 자체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 취소 처리를 잘 해 주겠다, 또 쿠폰이나 유혹성의 스미싱 의심 문자가 오더라도 열어 보지 마라, 또 경찰서에 피해내역을 우선적으로 신고하라 이런 등이 통신사가 내세우는 예방책입니다.

이것이 통신사들의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처 및 노력의 현주소인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지영 위원** 동 사안을 다시 잘 점검하시고요, 통신사별 스미싱과 또 악성 앱에 대한 설치 예방 대안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이 미래부 업무여서,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앱 관련해서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실 때 앱별로 요구되는 권한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 제대로 다 확인 못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렇지요. 보통 사진편집 앱 혹은 기타 꾸미기 앱의 경우 단순히 사진 저장 등의 권한만 있으면 되지만 인터넷 사용, 문자 접근, 연락처 접근, 마이크 등 불필요한 권한을 모

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접근과 마이크 등의 경우 실제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상에서 실행되고 있을 경우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도청도 가능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자의 대부분이 이런 권한을 보지 않고 무조건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경고하거나 알리기 위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갖고 계신 자료집 24페이지, 25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설명 자료 정도는 각 통신사 대리점과 유통점에서 판매 시에 함께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휴대폰 도난 시에 원격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알긴 알고 계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단순히 위치추적 정도만 가능하다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원격으로 휴대폰 초기화와 제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자료집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또 통신사 등과 함께 잘 협의하셔서 앞서 언급하신 대로 이러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미래부 업무일 때는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본질의하기 전에 또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합감사를 하는 입장이라 말씀드리기 좀, 아주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코바코 사장님이나 KBS 이인호 이사장님이나 친박 문제, 개인의 사적인 신념의 역사관 문제 이런 것과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공정성을 맡아서 해야 되는 역할을 전혀 분간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증언 등 국회법에 따라서 서류와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을 그냥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정정당당하게 그 법을 위반하면서 지키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때까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국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KBS 사장님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한 게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의 김문환 이사장님에 대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새로 내역을 보내 주셨지요. 보내 주셨는데, 이건 또 사실하고 다르게 허위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법인 신용카드가 법인명의 개인명의 두 가지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를 1개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카드번호가 날짜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자료제출 여부를 거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거나 또 거듭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어제는 사실하고 다른 그런 자료를 또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정감사 진행을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국정감사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실무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드를 분명히 어제

저녁, 우리가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제출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하네요. 실무자에게 알아보겠지만 제가 그런 일은 명백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속여서 이득을 취할 것은 맹세코 없습니다.

○**송호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설명을 드릴까요?

2013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인카드는 9200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내 주고 법인명의 카드는 M000 이렇게 해서 보내 줬는데 작년 3월 달에 12건을 포함해서 한 것은 이게 법인명의 카드인데 개인명의 카드라고 그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빨리 좀 다시 제출하라고 좀 해주세요.

○**위원장 홍문종** 시정하시겠다니까요. 빨리 시정하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송호창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부하 직원에게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게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깐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아니, 제가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요 제출범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생각을 한 것을……

○**송호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개인의 신념과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공공성을 지켜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구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 여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종편 4개사 총 144건 프로그램 중에 보도·교양 부분에 대한 심의가 141건으로 98%에 해당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재를 당했던 102건 중에 99건이 보도·교양 부분입니다. 이만큼 보도·교양 부분에 많은 제재를 받게 된 것은 원래 방송사들이 자기들 사업계획으로 낸 것보다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TV

조선 같은 경우는 24% 정도만 하겠다고 했는데 48% 이상을 보도 편성으로 하고 있고 그게 채널 A나 MBN, 다른 종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위반해서 보도 부분을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다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데서 특정 일방의 편견을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한쪽 입장만을 편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신뢰도도 계속 추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기관 그다음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의 사적인 신념과 공공성 공익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도편성 비율이라든지 제재사항이 있다면 제재를 좀 더 강화하고 명확하게 취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까 강길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상에 음란물이나 불법 유통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11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5배나 급증했다고 하고 불법 정보가 해외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것은 13배 이상 급증했다, 그냥 아무나 쉽게 ‘누드 요가’ 이런 걸 치면 어린애들도 사진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이걸 보여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해외사업자라서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인터넷 포털사업자 구글코리아나 이런 데다 얘기를 해 보면, 왜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계속 확인이 되느냐, 아무나 확인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방심위나 이런 데서 한번도 삭제요청을 하거나 제재를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포털을 통해서 구글이나 MSN의 Bing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불법 유통물을 삭제 요청하도록 해서 철저히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건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지금 정보통신망

법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 문제는 법조계 학계 또 여기 계십니다마는 방통위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신중하게 검토가 아니라 지금 해외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들에게 확인을 해 보면 방심위에서는 해외사업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조치를 취한 게 따로 있습니까, 이런 해외사업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해외사업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로 취한 것은 없는 데 다만……

○송호창 위원 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이게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송호창 위원 아니,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외사업자 쪽에서는 삭제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침해가 있어서 삭제를 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2011년 방심위에서 전혀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2011년 8월 달에 보면…… 아, 방통위가 했네요, 이때.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애플코리아나 구글코리아에 제재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3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심위에서 이런 불법 유통물, 구글에다가 지금 내놓고 음란물 또는 검색창에다가 누드라고 이름만 쓰면 어린아이들도 그냥 불법 음란물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방심위에서 지금 업무해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제재조치를 철저히 할 의사가 있는지 그걸 여쭙 보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접속차단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이나……

○송호창 위원 아니, 접속차단은 해당 음란물을 만든 사이트의 문제이고 그 사이트는 폐쇄가 됐지만 요즘은 보통 구글이나 MSN Bing 같은 데를 통해서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접속차단

을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사이트에 대해서까지도 삭제요청을 일일이 다 하셔야 된다는 얘가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하여튼 그 문제는 해외사업자의 문제 또 국내법의 적용 문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른 부처하고도 저기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아니, 그러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외사업자 쪽에서는 방심위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만 하면 즉각적으로 삭제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왜 방심위 쪽에서 오히려 그걸 할지 말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만일 구글이나 이런 데서……

○**송호창 위원** 아니, 이런 걸 처음 듣는다는 게 더 황당한 것 아닌가요? 임무 해태가 보통이 아닌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사실……

○**송호창 위원** 여기 사이트에다 지금 당장 한번 쳐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호창 위원** 나오는 게 사실인데 그냥 방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다만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그와 같은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 말은 제가 여기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규율을 하시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민병주입니다.

국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통위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제가 오늘은 지난 국정감사 14일 날 했던 것 확인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TJB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불성립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그때 위원장님께서 상대방의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성립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진행은 되고 계신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선해서 10월 22일부터는 불응하는 제도를 없었습니다.

○**민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침해한 만큼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지상파 재송신 분쟁 관련해서 상설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분쟁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분쟁이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 분쟁 조정이나 제정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생 차원에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시도하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미래부하고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유료방송은 미래부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민병주 위원** 아직 논의 안 하셨다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죄송합니다. 미래부가 지금 ITU 전권회의에 가 있어 가지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방심위 위원장님,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 나서 오보 낸 이후에 9건의 오보 사례가 있었는데 보

도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현실적인 측면 그리고 기존 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라는 내용으로 모두 권고 결정하셨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민병주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도의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맞습니다.

○민병주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이런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권고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초유의 사태라고 할 만큼 비극이었고 그래서……

○민병주 위원 세월호 관련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 재난방송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자꾸 새로운 기준도 마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들이 그런 조항이나 이런 데 위배되면 아주 엄정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준비하시겠다는 뜻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민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KBS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강화가 수신료 인상을 하기 전의 선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장님께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방통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공정성 보장과 자율성 또 수신료 인상은 서로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병주 위원 그냥 바람만 갖고 계시지 말고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당연히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계속해서 700MHz 관련해서도 질문

이 나왔었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상파 UHD 방송 도입 관련해서 주파수 할당 문제도 있지만 또 기술표준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이 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기술표준은 미래부에서 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 정책협의회에서 UHD의 기술표준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재 계획으로는 정책협의회에서 내년 초경에 어떤 합의된 안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글썄요, 노력만 해서 될 수 있을지 어떨지 좀 걱정은 됩시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꼭 가야 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기로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주파수나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내년 초에 결정을 하실 예정이시라니까 그 연구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정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진척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방문진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민병주 위원 지난 화요일 국감에서 4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퇴직금 누진제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타결됐다고 하셨다

가 곧 타결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아직 안 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곧'이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연말 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민병주 위원 연말 전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하여튼 11월 정도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계속 이 부분은 확인을 할 예정이니깐요. 그냥 국감에서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저는 성격적으로 그게 잘 못 됩니다.

○민병주 위원 KBS 부사장님!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예.

○민병주 위원 지금 고액 출연료 및 작가료 개선 관련해서 외주제작 문제가 지상파 방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예.

○민병주 위원 외주제작 개선 관련해서 고액 출연료와 고액 원고료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혹시?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예.

○민병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지상파 3사 1회당 작가료 및 1~3 출연료 평균금액 현황이고요. 이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드리겠습니까?

○민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은 이대로 가면 드라마 제작시장이 공멸할 수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방통위 위원장님, 이 부분 제도 개선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개략적인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병주 위원 개략적인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다 작가료, 과다 출연료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병주 위원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10월 13일 날 저희가 국감에서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값, 그다음에 이동통신사의 담합 이것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슈화하고 그것이 또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요. 그 이후에 미래부장관님과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업체를 만나서 설득도 하시고 그래서 10일 만에 각 제조사나 이통사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단통법을 통해서 보조금 대란 같은 이용자 차별을 해결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원리가 작동해서 요금제 경쟁이라든가 단말기값 경쟁으로 갔다면 저는 정부가 개입할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합과 독점의 완성 때문에 단통법 이후에 이용자 차별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차별 금지로 인해서 생긴 많은 여유 자금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작동이라고 보고 문제는 적극적으로 단통법 이후에 요금 인하나 단말기값 인하에 협조하지 않는 대기업들의 행태가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을 좀 따져 봐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요금 인하인지, 또 다른 기망인지, 요금제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는 가입비를 없애겠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요금제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 빠른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한번 대책 내놓으면 그다음에 다시 또 요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협의를 좀 필요하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아까 분리고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잘못된 시장을 정상화할 때는 좀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가격 인하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지 숨방망이 조치를 차근차근 취해 나가면 각 대기업들은 또 그것을 빠져나가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차체에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이 빨리 올해 내로 통과되어야만 지금 갖고 있는 말하자면 정책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을 주고 보자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주장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단말기와 이동통신시장의 정상화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시장, 즉 결합상품시장은 여전히 정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경품이나 보조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마케팅 전략을 펴려고 하는 잘못된 상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기관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단말기시장도 마찬가지로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보조금 가지고 소위 흔히 말하는 시쳇말도 돈질해 가지고 마케팅비에 몇 조씩 쓰는 것, 그 몇 조씩 썼던 마케팅비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썼다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7조가 날아간 거거든요, 7, 8조가?

그런데 이 인터넷 결합상품에도 똑같은 시장 교란행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3, 4년간 조사 안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저희의 일단 기본적인 방침은 지적하신 것처럼 비록 인원이나 예산

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상호 위원 과거에 말이지요, MSO 만들기 전에 과거 중계유선이 이런 식의 가입자 쟁탈전을 하다가 살인까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 정도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시장을 정상화시키셔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올해 내로 반드시 시장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다음은 방송,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방송통신위원회거든요. 그런데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이후에 항상 방송이 차별을 받고 오히려 정책이슈에서 뒤로 밀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참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집을 하나 냈는데요, MBC 방송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지상파 위기가 왜 왔는가를 제가 자료집을 냈습니다. 지난번 방문할 때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잘 보세요.

지상파 위기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있습니다. 외적요인은 광고시장의 감소라든가 이런 게 있지요, 새로운 뉴미디어. 내적요인도 무시 못 하는 위기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일 아니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을 가지고 개선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방송을 규제할 수 없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다음 네 번째요, 방송국들이 과다 투자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스포츠중계권, 월드컵 이것 900억짜리 가지고는 각 방송국이 총 매출 적자가 한 400억 돼요. 400억 넘지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결국은 월드컵 때문에 지상파방송이 몇백 억 손해를 본 거지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에서는 별로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안 생겨요. 주로 월드컵이요.

그래서 월드컵만큼은 과당경쟁을 통해서 지나친 중계권을 외부의 중계권 전문회사에 뺏기지 않고 방송국들이 세어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월드컵 때 이런 사안이 또 생겨요.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우상호 위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

해사이트 이게 지금 선정성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인터넷뉴스광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이것은 '누드'라고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뉴스인데 양 사이트에 벌거벗은 여자들이 찍어 있어요. 이것 내가 뉴스 보고 있는 건지 이걸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창피해서 인터넷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뭐냐 하면 이것을 지금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어요, 협회에다가. 이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규제라는 것은 자기네끼리 다벌어먹고 사는 건데 이것을 누가 규제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이 광고를 통해서 불법 성인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해요. 청소년들이 인터넷뉴스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영 위원도 얘기했고 송호창 위원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래 성인사이트는 차단이 가능한데 합법적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인사이트로 연결되거나 혹은 그 합법적인 사이트 안의 일부 요소가 성인물인 경우 이런 경우 규제가 잘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회전략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하여튼 오늘 우상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사실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범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아무튼 오늘 국감의 결과를 저희들이 아주 곱혀하게 받아들이어서 적극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도록 정말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덕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해운대·기장갑 배덕광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주파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정보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경우 가용 주파수가 있고 또 인접 주파수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라디오방송국을 허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KBS라디오의 경우에 서울에 5개, 부산에 3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MBC라디오의 경우에도 서울에 2개, 부산에 2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방의 경우에는 서울에 2개 채널이 있는 반면에 부산 지역에는 1개 채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경남 660만 지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본 위원에게 건의를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역의 정보 역차별 해소와 또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또 지역 통합 기능 수행을 위해서 부산·경남의 경우에 가용 주파수가 있다면 추가로 라디오방송국을 허가해 줄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가용 주파수 여부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가용 주파수가 있다면 당연히 지역 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현재 지금 라디오방송이 디지털화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고려할 때 신규 라디오방송을 허가하면 아날로그 장비로 했다가 바로 또 디지털로 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주파수 확보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단통법을 질타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했는데 아마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통신3사가 지원금을 대폭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기업들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국회와 정부가 이렇게 나서야만 되는지, 위원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지적하신 것처럼 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신 단말기 '갤럭시노트4'는 출고가가 96만 원입니다. 또 단통법 시행 직후에 보조금이 SK는 11만 1000원이고 또 LG U+는 8만 2000원 또 KT는 8만 원이었다가 어제 일제히 올라서 SK는 22만 원, LG U+는 29만 원, KT는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30만 원은 법에서 정한 보조금 최고 상한입니다. 여기서 더 주게 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배덕광 위원 소비자는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보조금 상한은 3년 일몰로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소비자단체하고 전문가들이 가격 하락 요인이 많이 있다고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조금상한제는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오히려 이를 방패삼아서 보조금 지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배덕광 위원 마치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입니다. 차라리 상한제를 확 거두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을 완전히 없애서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하도록 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내려가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보고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문중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시 주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는 공시를 1주일 후에만 하면 문제없도록 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통신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시를 열흘

후에 하든 한 달 후에 하든 괜찮도록 놔두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공시 가격은 모르더라도 공시 날짜 정도는 다 예측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통신사들의 장난도 막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공시 주기가 없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의견이십니까?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배덕광 위원 통신사들이 공시 날짜를 지금 현재는 정해 놓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7일 내에는 변경 못하고 7일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고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삼성이나 LG가 중저가폰을 해외에서는 60~70% 비중으로 판매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30% 이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번 질의 때도 이 내용을 위원장님께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면 이것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판매업자가 거의 강매하다시피 고가폰 중심으로 영업하기 때문인데 고가폰 마진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교묘히 고가폰 중심으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저가폰이 안 팔려서 국내에 안 파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중저가폰을 안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중저가폰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최신폰에 대한 지원금이 적을 때 중저가폰 판매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사들도 우리나라에 중저가폰을 많이 출시를 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덕광 위원** 추가질문 없이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통신사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낮추어지도록 방송위원회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늘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목적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간사, 홍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궐이사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위원장께서 이 방통위 설치 목적을 저는 위배했다고 봅니다. 크게 위배했다고 봅니다. 그 추천의 막중한 책임을 저는 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선 먼저 이것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죽 봤는데요.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하셨습니까? 방송법 48조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그런데 선관위 확인 사항이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 직접 검증하는 방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방법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다마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유승희 위원** 최소한의 확인절차는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확인했습니까? 그 이후에

확인했어? 본인한테 확인서 받았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본인에게 확인서 받았습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승희 위원** 그러면 3년이 경과됐습니까? 대통령의 자문·고문으로부터 3년 경과됐습니까? 이 부분 확인서 받은 것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방통위 회의 차원에서 당시 이인호 이사 후보의 선대의 친일 문제뿐 아니라 본인의 굉장히 지나친 편향된 시국관·역사관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KBS 국감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틀린 이야기를 옳다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아연실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적어도 팩트는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백범선생님에 대해서 ‘1948년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 이것은 팩트를 틀리게 얘기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범이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한 게 아니라 이승만 단정 수립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입니다. 이것 팩트 왜곡이지요.

그리고 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6·25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대한민국 중심이 아닌 북한에서 내려 보낸 선전 자료들의 영향을 받아 판단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그야말로 막 서슴없이 퍼부어했습니다.

그리고 헌법까지 부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1919년 대한민국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통용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헌법에 아시겠지만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3·1운동으로부터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헌법을 부인하는 말을 서슴없이,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이 지금 오열하고 있습니다. 오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헌법전문에 명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그 말씀하신 건

의를 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유승희 위원** 뭘 진의를 확인을 해요? 속기록에 보면 다 있고 다 보셨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인호 이사 추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방통위원장께서 그만두시든지 이인호 이사장이 그만두게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에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분의 편향된 역사인식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팩트는 왜곡하지 말아야 되고 헌법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알기로는 헌법을 부정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헌법을 부정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헌법의 내용을 이렇게 부정하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사로 추천하셨겠습니까, 위원장께서? 그래서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내부적인 논의를 상당히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만약에 나치에 투항해서 나치정권을 비호했던 그런 사람의 바로 직계 후손이 프랑스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나라고 하는 말까지 여기에 나옵니다. 부역했던 사람의 바로 직계자손이 프랑스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하겠다면 그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나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그렇게 지금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엄중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KBS의 공영성·공익성·공정성 이것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사장, 이사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 추천에 대한 책임을 저는 방통위원장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KBS 이사장이 KBS 방송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이나 공정성에 그런 부정적……

○**유승희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 자체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 자유와 공정성·공익성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찬찬히 살펴보

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법적으로, 이것은 정치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헌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월호 편파·왜곡 보도한 KBS와 MBC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심의를 또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패널을 좀 보시면, 여기 김홍경 씨라고 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유승희 위원** 그 당시에 세월호 탑승자인데 내리지 않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인 사람입니다.

KBS 9시 뉴스에 2014년 4월 17일 그리고 MBC에 4월 18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그날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면, KBS와 MBC 인터뷰 과정에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아이들을 끌어올릴 때 해경구조대는 뒤에서 지켜만 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의 문제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적하고 본인이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 자료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송에 나온 것은 김홍경 씨 영웅 만들기 보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팩트를 진실 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홍경 씨 자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의 심의 결과는 ‘문제없다’ 이렇게 됐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유승희 위원** 그리고 ‘편집에서 취사선택하는 것은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데 구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KBS·MBC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유지 그

리고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규정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겠으나 저희들 방송소위에서는 어쨌든 김홍경 씨에 대한 보도는 그분들의 영웅적인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의미가 컸던 것이고, 사실 해경이 잘못했느냐 하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초기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그 후에 그래도 양 방송사도 나름대로 지속적이고 비중 있게 보도한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하에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승희 위원** 아니,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진실을 은폐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일이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심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유승희 위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주관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장께서 그렇게 자꾸 변명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어쨌든 방송소위에서 전원으로 또 그런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정신을 되살려서 더 공정……

○**유승희 위원** 심의규정을 지켜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우리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개호 위원** 단통법 시행 이후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10월 17일 날 미래부장관과 함께 제조사·통신사 CEO 간담회 가지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때 분리공시 무산 이후, 또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주 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최양희 미래부장관님도 그렇고 우리 최성준 위원장님께서도 제조사의 책임 또 소비자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보도된 내용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도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본 겁니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이 달라서 오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또 각 사별로 입장이 다르다’ 이런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자 측 입장에서, 또 그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착란 현상에 대해서 냉철한 진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관계,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소비자들의 입장을 더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예.

우선 단통법의 취지가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좀 높여 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또 그 유용한 수단으로 분리공시제를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불행하게 분리공시제는 무산이 됐고요.

그 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뭐 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통신 시장이 주로 중저가 단말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요금도 저렴한 요금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까 뭐 전체적인 요금이 인하된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중대한 시장 교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소비자의 효용 또 사회적인 후생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단순하게 싸 단말기를 소비자가 선호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단통법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구현을 하려면 반드시 분리공시는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진지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분리공시 문제를 좀 접근을 해 주십사 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방송발전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문제는 지난번에 언급을 했구요. 조직 문제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개호 위원 최근에 뭐 정확한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 단위 운영조직이 있다가 과가 폐지가 되고 지금 팀으로 격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팀으로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지역방송 특별법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제 판단으로는 팀 단위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과 단위 직제가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엇그제 있었던 KBS 국정감사 때 이인호 이사장님의 발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분의 역사인식, 과연 그 역사인식이 구체적으로는 김구 선생님에 대한 폄하 문제, 또 문창극 씨 발언에 대한 이상한 시각에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아예 송두리째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 이런 등등의 얘기가 온 국민을 경악시키고 나아가서는 아주 분노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보도 후에 댓글 같은 걸 확인을 해 보시면 그냥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신분이 공인이라는 겁니다. 또 KBS 이사장으로서 또 KBS 이사로서 편집이나 방송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발언을 실제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측면에서 다수 국민의 동의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편협된 역사인식을 프로그램 편성이나 또 뉴스 보도에 반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추가 안 하렵니다. 1분……

○위원장 홍문종 예, 하십시오. 추가 안 하신다니까……

○이개호 위원 예.

그래서 다수 국민의 공감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역사인식이 KBS 프로그램에 결코 녹아들지 않도록 감독하고 또 감시해야 될 역할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의 역사인식이 방송의 자유나 공공성에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 예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건만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채널 선정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지금 여러, 4개 신청자 중에서 3

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방송의 취지에 맞는, 북(book) 채널을 비롯해서 공익적 취지에 맞는 신청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문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동안 세월호 사태 이후에, 오늘 발언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월호 사태 이후에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통신망 확보 이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늘 국정감사에서 보셨듯이 700MHz 주파수 대역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논의들을 보면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 걸까, 방송과 통신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내놓으신 대안들을 포함해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상파 UHD TV의 전국방송과 초고속 이동통신 둘 다 모두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될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주파수 대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논쟁은 방송과 통신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질의는 몇 분으로……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말씀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어저께 백기승 인터넷 진흥원장 그 자료와 관련해서 계속 그 자료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KBS가 사장 업무 추진비 내역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방문진 이사장님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속 송호창 위원님과 평풍하시는 거 보니 주실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KBS 부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사장님은

오늘 못 나오셨고, 부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왜 안 주십니까? 빨리 주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그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요청한 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고 지난번 KBS 국감 때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고 확감 때까지 달라니까 또 안 주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추가질의하기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관련 부서에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홍문종** 담당자 누구십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관련 부서에 지금 얘기는 해 놨는데요, 요사이 우리 회사 체육대회 기간이고 이래 가지고 관련 부서들이 체육대회 간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위원장 홍문종** 체육대회는 중요하고 국정감사는 안 중요합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챙겨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언제 주실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최민희 위원** 자료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 업무추진비 부분은 홈페이지에다가 공시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 거짓말입니다. 홈페이지에 총액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뭐 뭐 달라고 말씀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그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드린 게, KBS가 공영방송이지만 다른 민영방송과 다른 방송과의 경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자료 부분은 영업상의 비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보는 방안도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경쟁하는 방송사가 있어서 사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못 주시겠다는 게 코미디지 이걸 어떻게 국회에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어떻게 해 주세요.

○**위원장 홍문종** 경쟁사 때문에 안 준다는 건 별로 말이 잘 안 되는데요.

(웃음소리)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영업상 공개 못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아니, 국정감사에 공개 못할 부분이 뭐가 있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안 내시겠다는 얘기네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아니요, 필요하신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 그러면요 KBS에서 경쟁사 사장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공평하게 다 주시든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그건 저희들의 최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장님, 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국가기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논의하시면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또 자료제출 요구 없으십니까? 빨리 준비해서 주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어제……

○**우상호 위원** 이사장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홍문종** 가만히 계세요.

(웃음소리)

진행할까요?

주세요. 오늘 저녁 먹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안 주시면 오래갈 것 같아요.

○**전병헌 위원** 저녁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저녁 먹고 하겠습니까.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꼭 더 필요하신 분은 1분 더 드리겠는데요 웬만하면 5분 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병헌 위원님 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지금 단통법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단통법의 실패를 민간사업자들의 담합으로 몰아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고 본질을 잘못 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저는 단통법이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결코 효과적일 수가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단통법이 아니라 가계통신비 가계부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 공인요금 담합제인 요금인가제가 폐지가 돼서 요금에 대한 가격경쟁이 시장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단말기 자급제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단통법은 거기에 있는 약간의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본질적인 효과는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장려금과 보조금을 분리공시하는 정도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한편으로는 가계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선전해 온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실패고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인 본질의 문제점들을 꿰뚫는 그런 작업이 있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또 어떤 표방도 책임전가형의 문제의식을 가지고서는 실현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통법상에 있어서 나타난 네 가지 문제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것은 민간사업자와는 유관하게 정부가 관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단통법이 네 겹의 고무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이 교란되고 소비자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10월 1일 고시된 보조금 같은 경우에 갤럭시노트4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 보조금이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2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말하자면 불과 3주 만에 보조금이 10만 원 이상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정부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더라면 단통법 시행령을 앞두고 이와 같은 노력을 사전에 기울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정부의 단통법을 믿고 산 소비자들을 10만 원을 3주일새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빨날 수밖에 없지요. 소비자들이 더 빨나면 30만 원으로 또 내리도록 압력을 가할 것입니까? 이와 같이 보조금에 고무줄의 성격이 있다.

두 번째는 상한선입니다. 2010년도에 27만 원으로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지금 단통법의 시행령상에는 25만 원부터 35만 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즉 보조금 상한선이 6개월마다 출렁이고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또 북불북으로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상 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상 비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단통법 시행령상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가 보조금의 고무줄입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15% 내에서, 15%까지 추가보조금을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휴대폰 가격이 요동칠 수가 있지요.

(홍문중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 네 번째로 고무줄 분리요금제입니다. 단통법에 의해서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를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미래부가 24개월 약정 이용자에 한해서 12% 이상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12% 이상 할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 할인할 수도 있고 30% 할인해 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통법의 시행령 자체가 완전히 고무줄법이기 때문에 북불북법이고 따라서 이걸 심각한 정책적 오류와 실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와 잘못을 자인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통사업자 민간사업자를 불러다가 그쪽에다 다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이통사업자나 민간사업자들의 담합만이 이 혼란과 교란을 초래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한 것은 포장한 것은 대단히 정책적으로 양식적으로 잘못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12% 요금할인은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반드시 12% 이상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헌 위원** 아니, 확인을 했어요. 12% 이상 주기로 확정돼 있답니다. 담당 과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알아보세요, 그 부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미래부 고시인데 고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시기에는 책임전가처럼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조사나 이통사에게……

○**전병헌 위원** 왜냐하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최고책임자들이 한마디의 대국민 사과도 없이 민간사업자들만 불러다가 놓고 욕박지르니까 그것은 책임 전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보시는 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원래 저희 생각은 단말기유통법이 효과를 보려면 한 달 내지 두 달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 또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샀을 때의 억울함 같은 것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충분히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책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두면 자연스러운 효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소비자들과 유통점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빨리 당겨서 막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하자고……

○**전병헌 위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지금 방통위에 올려져 있는 홍보 영상 웹진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것도 번지수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나는 75만 원에 샀는데 어떤 사람은 52만 원에 샀다, 배 아프다, 이거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싸게 사서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나도 싸게 사고 싶다, 즉 모든 국민들이 52만 원짜리 핸드폰을 동일하

게 사고 싶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만화로 그려져 있는 이른바 홍보 웹진도 완전히 번지수가 잘못되게 그려져 있으니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됐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참고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준 위원** 방통위원장님, 혹시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이 발부되면 포털사들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구체적인 실무집행 방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정호준 위원** 잘 모르시지요? 포털사들이 감청영장이 발부되면 숨은 참조기능 등을 이용해서 대상자들이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는 메일을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계정에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전달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코드를 부여해 놓고는 감청영장 기간이 지나도 다시 해제를 안 해서 계속적으로 대상계정이 주고받는 이메일을 수사기관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감청입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준 위원** 그래서 방통위원장님께서서는 포털업계의 이메일 감청영장에 대한 자료제공 실태와 또 영장기간 경과 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감청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조사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미래부에 전달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문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불법감청이 되지 않도록 미래부하고 함께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 이사장님, 방문진 국감과 MBC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MBC가 교양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오늘부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오늘 아침에……

○**정호준 위원** 알고 계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이사장님께서서는 국감장에서 많은 위원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도 조직개편 같은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양국 해체는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MBC 가서도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요, 이사장님 국감 당시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말 모르셨나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거의 몰랐습니다.

○**정호준 위원** 거의 몰랐던 건 뭐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사실은 몰랐습니다.

○**정호준 위원** 뭐라고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몰랐습니다, 사실은.

○**정호준 위원** 확실히 몰랐다 그런 겁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정호준 위원** 그러면 방문진 이사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MBC가 몰래 이렇게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가 국감이 거의 끝나는, MBC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사장님 모르셨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 오셔서 증인선서까지 하셨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모든 정보라는 것은 옆방이라도 무슨……

○**정호준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모든 정보는 옆방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도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정호준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방문진 국감 때도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또 MBC 가서도 교양국 해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래서 검토 중인 사안이고 잘 모르겠다라고만 일관을 하셨는데 이걸 몰랐다 그래도 저는 사실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검토 중이고 금방 안 그럴 것처럼 얘기를 하시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이렇게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를 기만하는 게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방문진이 이렇게 교양국 해체 같은 작은 공적 책임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거듭 여쭙니다마는 도대체 방문진의 존재 이유가 뭐니까? 이거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항이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는데도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교양국 해체는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지금도 국회에 오셔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문진이 전혀 역할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핵심이 뭐냐 하면 조직개편은 방문진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하면 우리가 의결한다거나 또는 협의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아침에 처장님께 듣고 보고사항에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사회를 오늘 한다고 해서 ‘그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회……

○**정호준 위원** 아니, 이 얘기가 오늘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했을 때, 국회에서도 국감 중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MBC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으셨던 겁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준 위원** 도대체 저는 이렇게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고 국회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MBC하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저는 이사장님이 정말 직무유기, 어떻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을 제대로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적어도 MBC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문진이 어느 정도는, 중요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교양국 해체 문제는? 그런데도 전혀 역할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

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정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영 위원** 방통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무엇이며 법 적용 범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경우에 간접광고를 할 때에는 어린이들이 방송의 내용과 그 광고의 내용을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제 이 질문은 지난번 코바코 국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통위 소관인 것 같아서, 우선 보면 현 방송법의 어린이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간접광고에 대해서 규정한 방송법은 물론 시행령에도 어린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또 보시는 화면처럼 범위가 각기 다릅니다. 아동복지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그래서 그나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의 내용은 어린이 정서 함양 등에 대한 것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 대상으로 하는’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역시 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실제 본 위원이 지상파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화면으로 보시면 프로그램 범위가 중구난방입니다. 워낙 유명한 ‘TV 유치원’부터 만화, 다큐멘터리 또 심지어 주말 저녁에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범위 역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지요.

본 위원은 이것이 실무자의 실수라기보다는 명

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정책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12세는 13세 미만이니까 12세 아이들은 프로그램의 간접광고를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12세는 13세 미만이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2세 이상 시청가면 볼 수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라는 것은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게 제작된 어린이 대상 프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2세 이상 시청가라는 것은 12세만 넘으면 꼭 어린이 프로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를 규정하는 것 같아서 그 양자 사이에 좀 불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혼란스럽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린이 시청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 연령대로 나눈 유일한 제도인 시청등급에 의하면 12세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에 간접광고를 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그리고 동물 다큐멘터리와 같은 전체 관람가에도 간접광고를 했고요. 전체 관람가와 12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매출액은 KBS가 20억이었고 MBC가 40억으로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관성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점이 잦아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이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주요국들 모두 어린이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범위 먼저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만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12세 이상 시청가에 간접광고를 하

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케이블 간접광고를 100분의 5에서 10으로 확대했는데 진흥이나 규제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대는 한 것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의합니다.

○**류지영 위원**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과 간접광고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나 정책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문제들을 발굴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7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나요?

박효종 위원장님,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어 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것 우리 일입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에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 이제는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대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과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비록 한 사이트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저희가 국감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한 예를 든 것뿐이지 이것은 포괄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왔던 답변은 미즈넷에 대해서만 권고결정을 내리고 마치 할 일 다 했다는 식,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지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방통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도 자녀가 있냐고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해서 애가 1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컴퓨터를 클릭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애가 이런 콘텐츠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는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면서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상당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숙제를 대신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위치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셔야 돼요. 다행히 박효종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존경하는 송호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말미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해 사이트,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 무작정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자는 거예요. 아까 우상호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만 켜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양옆에 나와 있는 모든 광고란이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불과 5·6년 전만 해도 찾고 찾고 또 찾고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유해 콘텐츠가 아주 버젓이 소위 말하는 프론트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문제, 인력 부족 이쪽으로 몰고 가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창의적으로 우선순위는 바뀌더라도 이 부

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안을 찾아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끝내면서, 이게 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틀이라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에는 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못 한다면 그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국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의원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이유에서라도 절대로 안 놓칠 거니까요, 이것은 앞으로 꾸준히 제가 가지고 갈 짐이다, 따라서 같이 논의하시고 특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법 개정안이 필요하거나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같이 노력해서 솔루션을 같이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잠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자료요청 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제가 오늘 세 번째 이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냥 무시하고 계시거든요. KBS 사장 업무추진비 내역……

방문진 이사장님도 송호창 위원은 주시고 저희는 안 주시고 그랬던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KBS는 언제 주실 겁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사실 물론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 회사 자체가 방송사고 언론사기 때문에 언론사의 최고책임자의 모든 그런 것을 상세히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적절한 방법을 좀 찾아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 양해할 수 없어요. 이것 주

고받기 하자는 게 아니고 주시라는 거예요. 국감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사안이 아니면 주세요. 방통위원장님도 국가 안보적 사안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저 계속 요청하고 오늘 집에 안 갈 겁니다. 저 혼자 여기 있을 겁니다, 주실 때까지.

방통위원장님, 저는 700MHz 주파수 문제를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방통위와 미래부가 정말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ETRI가 어제 오후에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LDM 방식으로 지상파 압축 방식 개발해서 이게 잘하면 72MHz 정도의 UHD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뭔가를 개발한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한 것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마는 그런 취지의 것 얘기 들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핵심이 상용화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은 하나의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필 국감 앞두고 ETRI가 이것을 발표한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또 제가 2.6GHz 대역에서 광개토플랜3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저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갈등하기 보다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그리고 그전에 제가 통신사업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니 그런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은 방통위와 미래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주파수 플랜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단통법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여쭙려고 제가 규개위 회의록을 계속 요청했는데 사실 그때 안 주고 이번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속기록이 아니라 회의록이어서요, 방통위가 가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이 관련해서 고삼석 위원님, 문제의 규개위 회의에서 방통위원회의 실무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차관회의는 일단 저희 이기주 위원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규개위는 오남석 국장이 참석하셨나요, 그렇게 했고 저는 구체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습시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별로 취재하신 내용이 없나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어떤 것을 질문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민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규개위의 회의록을 보면 ‘지원금 공시 기준의 경우 분리공시의 상위법 적합성 여부가 주요 사항인 만큼 법률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냥 발언요지로 적혀 있고요. 다들 그것에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방통위는 사실 입장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분리공시 고시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이끈 데가 어디입니까? 기재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 혹시 오 국장님, 이 분위기를 이끈 게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최민희 위원** 규개위 발언요지에 아무것도 없고 ‘분리공시가 상위법에 위반이다’ 그것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그렇다’ ‘그렇다’ 이런 거예요. 오 국장은 어떤 발언을 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저는 규개위가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가 들어가서 제가 필요할 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규개위 위원님들께서 토의할 때는 저희가 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저희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랬군요.

그러면 말하자면 법제처 검토의견대로 분위기를 이끈 게 어느 부처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제가 참석했을 때는 규개위 위원장께서 법제처의 법해석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구했고요. 그래

서 법제처에서 오신 규개위 정부위원께서 법적 의견을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제가 간단하게……

○**최민희 위원** 반대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저희는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민희 위원** 혹시 고삼석 위원께서는 누가 이 분위기를 이끌었는지 들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규개위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듣지는 못했고요. 사전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언론에 나온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면 이게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법제처에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언론보도가 맞는 거군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지난 국정감사 본감사, 미래부 감사에서 최양희 장관께서 ‘규개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입장 받아들여서 분리공시제도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방통위가 조사하고 제재하는 대상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보조금 상한 준수 여부나 공시 준수 여부나 또 제조사하고 이통사·대리점 간 또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 간의 불법행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조사하고 제재해야 될 대상이, 항목이 늘어났는데 또 그 대상도 기존에 이통 3사에서 전국의 5만여 개 대리점·판매점 또 제조사까지, 그런데 조사인력은 제가 들은 것으로는 방통위의 시장조사과장 포함해 가지고 9명밖에 없고 그중에 전담인력은 2명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제대로 시장 실태 또 불법행위 상황 조사하고 제재하고 하는 게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저희가 안행부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똑같이 3년 한시로 통신시장조사과를 한 과를 늘리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의 한 과가 내년에 늘어나게 됩니다.

○**조해진 위원** 거기에 지방 조직도 없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방 조직은 아니고 그냥 중앙 조직인데 조사 업무, 제재 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를 부여해서 한 과를 늘렸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게 충실하게 돼야 법 시행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휴대폰하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 또 부품보유기간이 4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 가지고 현재도 보유기간 중인데도, 단종 이후 4년 이내인데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서비스를 못 받고 이런 일이 많은데 지금 이제 법 시행 이후에 중저가폰 또 중고폰 구입이 급속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하자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있는 고시도 충실하게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중저가폰 또 중고폰을 소비자들이 애용하려면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그러려면 이 고시가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나 또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것도 공정위하고 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미래부 고시로 알고 있는데요.

○**조해진 위원**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미래부에 전달을 해서…… 품질보증기간은 미래부 고시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공정위 고시 2014-4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기관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공정위 고시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어느 기관이든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필요한 부분이라면 긍정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방심위원장님, 인터넷 악성게시글로 권리 침해 받은 데 대해서 심의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것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한 10~20년 이 기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권리·자유는 급속하게 신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업무와 관련된 걸 보면 표현의 자유 이게 거의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급속하게 신장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지요, 개인이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개인이 피해를 입는,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또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권리를 누리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관용적이고 하지만 그 권리를 구현해 주기 위해서 다른 개인, 똑같은 가치를 지닌, 또 권리를 가진 다른 개인이 피해를 입는 것에는 아직 까지도 심하게 말하면 무방비 상태 같아요. 그것보다도 더 먼, 우리 법률 용어로 보면 사회적 법익 또는 더 먼 국가적 법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거의 속수무책 같고요. 그것은 뭐 아예 그냥 방치 상태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방심위뿐만 아니라 법체계에서도 그 다른 개인이 입는 피해에 대한 보호, 구제 또 그것보다 좀 더 큰 사회적 법익 또 국가적 법익, 사회와 국가라는 게 개인으로 구성되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법익·국가적 법익이 구체적으로 개인이 있는 게 집단화되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호, 구제, 앞으로 장기적이고 정책적으로 좀 강화시켜 나가시고 방통위도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여쭙 볼게요.

제가 지난 이번 국감에서 알뜰폰 선불폰 중에서 충전 잔액 1000원 미만이 67%, 충전기간 6개월 이상이 64%로 나타나는 등 알뜰폰 가입자 400만 명 중에서 한 100만가량이 허수일 가능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최근에 또 SKT 계열사에서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 선불폰을 이용,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포폰 10만 대를 개통한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방통위는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치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9년에 방통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이통사들이 거짓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는데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 이동전화 가입자 460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대포폰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이것 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확인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점유율 유지나 대포폰을 목적으로 선불폰을 개통하는 것은 범죄행위지요? 그리고 제가 알뜰폰 시장을 명들게 해서 가계통신비 인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가 이번 기회에 다는 못 하더라도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선불폰 가입자 270만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유령 가입자 또 대포폰 등 개인정보 도용실태를 파악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데 한번 검토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알뜰폰 부분 관장이 미래부로 되어 있어서요,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은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좌초됐는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서 위원장께서 ‘좌초된 것은 아니다, 명확히 밝히고 추진할 계획이니 그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방통위에서 제출한 계획을 보니까 달랑 A4 용지 한 장,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이렇게 방통위에서 정확한 입장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지연되고 개인정보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첫째로는 방통위가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우려가, 또 신뢰가 무너졌고요. 또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만들어지니까 기다렸던 관련 기업들이 우왕좌왕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도 좀 애매해지는 그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제도와 함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뚜렷한, 명백한 입장을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구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지금 KBS 부사장님이시지요, 오신 분이?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예.

○최원식 위원 제가 22일 KBS 국감에서 사내 게시판 ‘코비스’에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파업을 독려하거나 다른 사이트 글을 퍼 올렸다는 이유로 무차별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외쳐야 하는 KBS가 도리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서면으로 지적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지금 아직까지, 이제 오고 있는 중이래요.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겠는데, 그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KBS는 공영방송이고 방송기관으로서 표현

의 자유를 충분히 누려야 하고 또 스스로 확보해야 되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KBS는 사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그런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공영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필요한 속성상 어떤 다른 집단보다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지 그 방송의 발전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KBS는 자기 의사와 다른 사내 구성원들의 이의 제기, 그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계속 징계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 그리고 KBS가 그렇다면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지적이 과하다면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고 이런 입장을 이해하셔서 좀 징계, 특히 내부의 징계는 신중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운영해 주십시오.

또 그 부분에 제가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꼼꼼히 살펴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KBS·EBS·MBC 공영방송 3사에 대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국회에서 KBS·EBS·MBC 등 공영방송 3사 이사회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어요.

그랬더니 방송 3사 이사회에서 그 세칙을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방청은 허용하지만 회의록·속기록 작성이나 속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저번에 이인호 이사장만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입법한 취지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운영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 이런 것 가지고 말장난, 물리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엄격히 봐 가지고 세칙을 정한다면 그것은 사실 온당치 못합니다. 투명한 운영의 전제로서의 공개이기 때문에 회의 방청 허용뿐만 아니라 회의록·속기록 작성과 그 공개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KBS는 받아 줬는데 다른 이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홍의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지금 단통법 보면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서도 뭐 폐지 검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금 인가제 문제, 단말기 자급제 문제, 분리공시제 문제 이런 문제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열흘쯤 지났으면 국회에 오늘 말씀하실 때 이것을 실시했을 때, 혹시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검토된 게 있으면 제 방에 한번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단말기 유통법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비용들 속에서도 또 통신 납입금이, 이동통신 소비자가 납부하는 납입금 중에 순수 통신이용료, 통신기기 할부금, 부가서비스액, 가입비, 소액결제액 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본자료, 상세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물론 제가 요구해 봐야 뭐 주시지는 않을 거고, 이런 것 가지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저희 방통위가 갖는 게 아니고 미래부에서 그것을 일부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 대신에 이통 3사의 사업보고서 등에서 추출된 매출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5년간 이통 3사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납입액수가 2010년~2012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3년~2014년 2분기까지 다시 증가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통신비 경감 공약을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봐서 13년도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 총매출액이 한 20조가 되는데 거기 보면 57%, 11조가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입니다. 34%는 단말기 매출액이고 9%가 기타 매출액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입금 중 57%만 통신서비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비용을, 그러니까 부대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방통위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가능하면 국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공유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하는 비용, 통신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이용비라든가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이것 각각 묶어서 하지만 안 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쓰지 않는 비용, 남기는 비용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서민들 입장에서 단 돈 100원, 1000원, 1만 원이 아쉬운 이때에 우리가 그냥 ‘지켜봐 달라, 조금 두 달, 석 달 뒤에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도 분석하시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냥 툭툭툭 끊어 가지 마시고 좀 관심 있게, 더 애절하게, 좀 아프게 분석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실 테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받는 게 미래부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방통위에서 이것 결정하는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하여간 미래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리고 제가 13일 국감 때 휴대폰 할부금 채무자가 75만 명이고 채무액은 6400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삼성전자·LG전자 4개 모델 스마트폰은 국내 출고가 미국보

다 한 24만 원 비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주요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 자료를 인용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우리나라가 가장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삼성전자가 곧바로 반박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별 시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성이 다르고 사양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통신서비스가 타 국가들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 출고가 차이가 아니라 보조금 차이가 크다는 점 이렇게 해명자료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날 17일 날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자료에 접근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정확한 출고가나 이통 3사의 보조금이 반영된 현황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든지, 비밀은 지켜 줘야 되겠지만, 그러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서로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서로 그냥 정확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도 미래부하고 같이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어쨌든 이번 국감을 통해서 통신비나 또 단말기 가격이 높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지금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최양희 장관님이나 방통위원장님께서 인하 노력을 하겠다는 게 상당

히 많은 박수를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하여튼 이번에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정부 부처에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업계하고 잘 대화를 하셔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통신요금 인가제 이 부분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초기에는 독과점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은 3사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미래부 업무여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처럼 요금경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금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인하돼야 되는 것은 맞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 위원 그리고 전파인증제도도 개선이 돼야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싼 외국 단말기를 사고 싶어도 지금 불필요한 전파인증료가 너무 높아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인증제도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도 미래부하고 논의를 해서 하여간 소비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리고 보조금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상한제를 철폐해야 한 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3년 한시 일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10월 초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 지원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래서 정부부처에서는 독과점의 여러 가지 폐해들을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하니깐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업계가 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

기 위해서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또 언론을 통해서도 반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요금이나 또 단말기 인하정책을 꾸준히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언론 쪽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KBS 부사장님 말씀하셨지요? 언론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에서는 언론에 대한 규제나 언론에 대한 견제를 소비자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수단을 통해서, 만약에 언론이 오보를 내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는 막대한 손해배상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방통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이 워낙 수준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인 압박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의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사에 게시는 종사자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또 정치권에서 언론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실 간섭하는 것을 많이 배제하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놔는데 언론사가 그걸 이용해서 책임 있는 보도는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라든가 이런 것이 도입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었는데 OBS 경영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방통위가 밀

어붙인 미디어렘으로 해서 OBS 광고매출이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또 사실 OBS가 지역방송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제가 MBC 문화방송 관련 자료 집을 냈고 일관되게 방문진 질의 때도 MBC가 지금은 어떤 규제에도 꿈쩍하지 않고 거의 특권적인 언론사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해고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고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도 새로운 경영혁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너무 무풍지대에서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방문진 국감 또 MBC 비공개 국감, 방통위 국감을 통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타했는데 꿈쩍 않고 교양제작국 해체라는 카드를 또 내놨습니다.

이제 방통위원장님한테 묻기도 참 쑥스러워서요 저는 MBC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시와 규제도 받지 않다 보니 저런 무소불위의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방문진 이사장님도 방문진 자신들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서 MBC를 개혁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님도 권한이 없다고 하시고 하니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위원 국회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굳이 위원장님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야 위원들이 이 문제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KBS에 질문하겠습니다.

매출이 어려우니까 부득이하게 간접광고를 많이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객관적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보도프로그램에까지 간접광고가 등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꽤 여러 건이 시정조치 주의 권고 이렇게 받았는데 드라마나 예능까지는 몰라도 이런 보도·교양 프로그램에까지 간접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예, 알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간접광고를 도입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런 문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예.

○**우상호** 위원 지난번 저희가 EBS 국감을 하면서 여야 위원들이 다 같이 공익성 지수가 제일 높은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불균형 때문에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게 10년째 국감에서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제가 관련된 당국에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EBS 같은 데가 저렇게 교재 판매회사로 전략하고 있는데 진짜 이 공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EBS의 재원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공적인 면, 그러니까 수신료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위원 KBS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저희들이 수신료 현실화안에 EBS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우상호** 위원 그것도 10년째 똑같은 답변이에요, 올려 줘야 나눠 준다는 얘기. 수신료 인상에 연동시키는 한은 EBS의 활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원 확보 마련을 그렇게 편하게 하지 말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끼리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재홍 위원님 혹시 고민해 보신 것 없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내부에서 논의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한번 좀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심제도에 대해서 제가 박효종 위원장님께, 보통 재심이라고 하면 1심에서, 재판부가 달라야 되잖아요. 보통 1심에서 판단 내리고 재심은 다른 기구가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재심제도의 원리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유독 1심과 재심을 다 같은 위원들이 하시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그 문제는 방통위하고 심각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우상호** 위원 보통 우리가 재심을 할 때는 1차에서 결정할 때 판단하지 못했던 새로운 근거가 나오거나, 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KBS 오보에 대한 재심 때는 새로운 근거가 나온 게 아니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심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소 과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해서 자신들이 1심에서 다소 과하게 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재심 바뀌요. 이건 누가 바도 코미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재심을 다른 기구에서 할 수 없이 다시 해야 한다 하더라도 재심을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놔야지 '1차 판단은 조금 과했어, 바꾸자'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싸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개선 대책,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우리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그래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심을 할 때는 다른 위원을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뜻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상호** 위원 재심을 받아들이는 사유가 기준이 분명해야 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유승희입니다.

KBS가 자회사인 KBS아트비전에 방송용 미술비를 지급하면서 2011년에서 2012년 2년간 약 111억 원의 비용을 부풀려 지급했다는 사실이 올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

○**유승희** 위원 답변 안 하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직 못 하셨다고요? 감사원 감사결과 저도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KBS가 인력도 아니고 시세보다 100억 이상을 더 준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전혀 조사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제가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저는 이미 파악했어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파악도 못 하셨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나 보고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시간도 5분밖에 안 되는데?

아니, KBS 일선 PD들이 KBS아트비전의 비싼 가격 그리고 낮은 품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부사장 그거 모르고 계셨나요, 지금? 그런데 그전에는 미술제작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고 그것이 정착이 돼서 상당히 품질향상이 돼서 2009년 2010년도에 검증된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데 2011년부터 갑자기 프로그램 단가제를 폐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트비전과 미술업무 인건비에 대해서 연간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년간에 111억 원의 비용을 더 지불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얹어 준 이유가 항간에는 비자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KBS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느냐면, 2012년도 적자가 얼마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2012년도에……

○**유승희** 위원 62억입니다. 62억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KBS아트비전을 통해서 더 얹어 준 돈이 111억이에요. 매일 지금 수신료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내부 운영을 하면서 매일 수신료 타령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영상장치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계상에 보면 업체별 수주 집계액하고 프로그램 집계액하고 3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30억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그 부분은 텔레비전본부 부분만 보고가 됐고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KBS가 KBS아트비전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돈 빼먹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미술비 용역을 이전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잘 하면 될 것들 갖다가 왜 연간계약 체결로 해 가지고 아트비전을 통해서 111억 원을 더 얹어 준다든지 영상장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발주비랑 업체별 수주 집계량 30억 차이가 나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위원님, 30억 차이가 나는 것은 텔레비전본부 현황만 보고를 해서 그런 거고요 보도본부와 그다음에 지역총국들을 합치면 30억 원 부분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업체별 수주 집계량 프로그램을 다 집계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지역하고 보도본부는 빠져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빠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예.

○**유승희** 위원 그러면 빠진 30억 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어쨌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2년에 111억 원을 더 얹어 주고 실질적으로는 62억이 적자가 발생한 해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서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수신료를 더 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부 운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잘 살펴보셔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예.

○**유승희** 위원 방통위에서, 지금 KISA 관련해서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적발이 되는데도 80%가 개선이 안 되고 어제 KISA에서도 이게 개선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행정조치는 방통위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방치된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웹사이트 운영 업체들이 대부분 굉장히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저는 징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영세 업체여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나 그런 처분보다는 어떻게든지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효과성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조치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 임시조치 부분 있잖아요, 포털에 대한 임시조치 부분? 그런데 지금 망법에서 포털이……

○**위원장 홍문종** 1분 더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또 할까요? 어차피 또 돌아갈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홍문종** 아니, 안 돌아가요.

○**유승희 위원** 망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포털에 게시된 정보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포털 게시물이 안 보이도록 임시조치를 취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임시조치가 계속 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서 2010년도에 14만 건에서 2013년도에 37건으로 폭증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과도 안 맞거든요.

방통위 차원에서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저도 다른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방통위 차원에서의 개정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통과했고 법제처 심사 중이고 조만간에 국회에 넘어오게 되면 통합해서 법안을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제기된 포털 게시물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쟁해결이 완결되기 전까지 임시조치를 지속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통위가 낸 개정안에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가능하면 분쟁

해결…… 원래 임시조치가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히 분쟁조정위에서 해결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30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임시조치를 해제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기본적인 원칙이 노티스 앤드 테이크다운(notice and takedown)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작권법 이런 법리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도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게시물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보여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안은 확정이 되어서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안을 변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국회에 제출했을 때 위원님 발의한 법안하고 해서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승희 위원** 좀 더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기본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안 개정이 되어야지 잘못 개정되면 개정된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박효종 방심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장병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인터넷상의 차별·비하표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장병완 위원**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적할 때마다 방심위에서도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거의 여야 구분 없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최근에 차별·비하표현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글썄, 아무튼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병완 위원** 오히려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 24건이던 것이 2013년도에 622건, 금년 9월 643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된다면 사실은 방심위가 차별·비하표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자들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방심위도 적발 건수를 늘리고는 있습니다마는 뭔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이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지요. 특히 차별·비하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베 사이트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아무튼 일베……

○**장병완 위원** 2012년 8건, 13년에 330건 그리고 금년 이미 8월까지 215건이네요. 그런데 그 세부표현을 보면 이 자리에서 정말 직접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심위가 취하고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너무 현실에 동떨어져 있다, 즉 말해서 적발을 늘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일 뿐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최소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유해사이트로 지정하는 등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작년 11월—딱 1년 전입니다—미방위에서 지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 당시 박만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권고 조치하고 시정이 없을 경우 유해사이트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상 권고 딱 한 번만 했을 뿐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 일베의 차별·비하표현들이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불건전하고 몰인간적인 표현들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일베 사이트를 폐쇄를 하든지, 그게 문제가 있다면 우선 단계적으로 최소한 유해매체로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장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 방심위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도……

○**장병완 위원** 그런데 공감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최근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이거지요. 이제는 뭔가 칼을 빼들 때가 됐다는 얘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청유 매체물로 지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그다음에 내적으로 직접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권고조치는 한 세 번 정도 사실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문제나 전체를 청유물로 지정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과잉금지라든지 이런 원칙에 혹시 위배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장병완 위원** 위원장님, 권고를 세 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한 번 무는 것같이도 생각 안 하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 왜 유해매체물 지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방심위의 권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그런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여기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라든지…… 하여튼 그쪽으로부터는 그래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대답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로서도 조금 더 아주 엄격하게 모니터도 하고……

○**장병완 위원**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또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 기준이 최종하지만 한 매체를 유해사이트로 지정을 하려면 70% 정도가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방심위 위원들로서도……

○**장병완 위원** 70%라는 기준 바꾸세요. 그게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기준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이 물론 한 것입니다.

○**전병헌 위원** 잘 보세요, 70%가 안 되는가 실제. 상식 갖고서 보면 70%가 훨씬 넘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수치를 보면 50%도 어떻게 보면 큰 것이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죽 정해 놓은 규정, 물론 내부규정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장병완 위원** 우리가 청소년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못 지키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아무튼 장 위원님의 우려 저희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고 하여튼 더 노력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덕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해운대 기장갑 배덕광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시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아까 의미를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덕광 위원** 현행 단통법은 한 번 공시를 하면 그다음 공시는 7일만 넘기면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도록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배덕광 위원** 예를 들면 10월 1일 공시를 했다면 그다음 공시는 10월 7일 이후만 넘기면 10월 10일에 하든 11월 10일에 하든 12월 30일에 하든 상관이 없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배덕광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한 소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배덕광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그 고시를 처음 만들 때는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일주일 후에 A 업체가 올리면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B 업체도 좀 올리고, 또 내리면 같이 따라 내

리고 이런 것을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이 없어서 불안하게 되는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고시가 어느 게 더 적절한 것인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설사 지원금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고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시라면 제도 자체를 저희 고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다음 공시가 언제 있을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합리적인 소비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신사들의 장난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7일마다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고시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적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예측을 잘못 하고, 언제 이게 내리고 오르는지 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덕광 위원** 그래서 이 점에 관련해서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미.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홍문종** 계십니까, 9시 다 됐는데?

○**전병헌 위원** 아니, 12시도 안 됐잖아요, 아직?

○**위원장 홍문종** 예?

○**전병헌 위원** 12시도 아직 안 됐는데, 국감다운 국감 본격적으로 해 봅시다.

○**위원장 홍문종** 질의하실 위원님 손 좀 들어 보세요. 몇 분이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무슨 3분이예요, 5분씩 주세요.

○위원장 홍문종 그리고 플러스 1분.

○전병헌 위원 그러면 3분씩 세 번 해야 돼. 5분씩 두 번 하든지, 3분씩 세 번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뭐.

○위원장 홍문종 4분 플러스 1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지켜 주세요.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병헌 위원 김밥으로 때우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전병헌 위원 우리는 김밥을 먹었는데……

이인호 이사장하고 전혀 잘 모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병헌 위원 지금 최성준 위원장께서는 사법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사법부에서 신망 받는 법조인으로 일하시다가 방통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한 그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은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이사장 추천은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전 이사장이 사직을 하신 이후에 다양한 분들하고 제가 어떤 분이 새로운 이사가 되시는 게 좋을지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KBS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보다는 사회 원로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전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인호 교수를 이사로 추천한 분이 누구냐라는 말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추천한 분을 제가 딱 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병헌 위원 왜 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사장이 됐는데 어떻게 그분을 추천한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양한 풀 안에서 제가 이분 저분 보다가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병헌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망 받는 법조인으로 재판하시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의 증인 선서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본인께서도 증인 선서를 받았을 때의 심정과 똑같이 지금 솔직담백하게 진실을 고백해야지요. 그렇게 얼버무리고 진실을 가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전병헌 위원 제가 엇그제 이인호 이사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성준 방통위원장하고는 일면식도 없었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방통위원장으로부터 KBS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닷없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본인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오히려 KBS 근무경력이라든지 또는 방송계에서 일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연고나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뜬금없이, 본인 스스로도 ‘느닷없다’ ‘뜬금없었다’라는 분을 KBS 이사로 추천하기까지에는 그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입이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고 그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성준 위원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대로 그대로 이실직고하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KBS 출신이 아니신 분으로서 사회 원로이시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전혀 KBS를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KBS 이사를 지내신 과거의 분들 리스트를 보면서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 의견을 들었느냐는 말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계에 계신 분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병헌 위원 더더욱 이인호 이사의 경우에는 편향적 역사관 때문에 계속 구설수에 있고 논란이 있었던 당사자인데, KBS가 어떤 지위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방송법상에서 KBS는 공정성과 공공성,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또한 민족적 동질성을 진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사, 그것도 그냥 평이사도 아니고 이사장 자리에 어떻게 논란을 부르는 사람을 이사장 내지는 이사로 그렇게 천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유감스럽게도 최성준 위원장께서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인호 이사장께서는 소위 독립운동가와 건국유공자를 분리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성준 위원장께서는 독립운동의 목적이 뭐니까?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하는 것이 독립운동 목적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런데 독립운동 한 것과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식의 아주 편협하고 갈등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신 분으로 확인이 됐어요.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홍문종 추가질의 없습니다.

○전병헌 위원 있지요, 당연히. 마무리하게요.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보니까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 이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확인되고 공인된 가치이고 이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갈등적이고 분열적으로 갈라서, 저는 매우 현학적인 이분법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일부러 가르는 것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대로,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유공자들에게 건국훈·포장을 주는 겁니다. 왜? 독립과 건국은 동일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병헌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분을 평이사도 아니고 이사장으로 천거를 본인께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면 저는 아주 실망스럽고 최성준 위원장께서 그 어떠한 과오보다도 커다란 과오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분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떤 역사관을 가지셨든지 관계없이 KBS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에 그런 본인의 역사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역사관으로 인해 가지고 KBS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위원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정호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호준 위원 방통위원장님, 코바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중소기업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혁신형중소기업을 매월 선정해서 KBS·MBC에 6시 황금시간대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광고비의 70%를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수혜기업이 2009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까?

○정호준 위원 수혜기업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 수혜기업이요?

○정호준 위원 수혜기업이 2009년부터 점점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를 하자면 2009년도에는 148개 회사가, 2010년도에는 102개 회사가, 2011년에는 89개회사가, 2012년에는 83개 회사가, 2013년에는 68개 회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수혜 회사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 선정률을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에는 167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148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90% 가까운 회사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의 경우에는 123개 회사가 신청해서 68개 회사밖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5% 정도 선정률이 급감한 것인데요. 사실상 중소기업의 지상파광고 가능성을 여는 유일한 창구가 줄어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그렇게 숫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

히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취지에 의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수가 줄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준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도입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한 광고경쟁구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중소기업과는 다르게 막대한 자본력과 전문화된 유관회사와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양질의 광고를 대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출발점이 좀 다른데요. 이러한 지원책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창의성을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역행하는 일이고 또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점검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검토해서 그 혜택이 많은 기업에게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꼭 이 부분에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광고를 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바코 사장님,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이 없으셔서.....

코바코의 설립취지, 뭐니까? 코바코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지상파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그리고 방송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각종 공익연구사업 등등 공익지원사업입니다.

○정호준 위원 그렇지요? 저번 국감에 사장님 나오셔서 소위 말하는 친박충성서약 자기소개서 때문에 아주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날도 얼핏 말씀하셨습시다라는 많은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회를 드리려고 여쭙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제가 자기 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조금 사례 없이 제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 말하자면 코바코의 설립목

적에 따른 엄중한 공익성을 아주 자각을 하고 절대 그런 정치적인 편견이 업무에 개입하지 않도록 아주 적극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공정무사하게 업무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 주시고요.

코바코 사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우리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또 건전한 방송문화 발전 또 방송광고 진흥을 위해서 꼭 끝까지 이바지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제가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조금 드리면, 2012년·2013년이 줄어들게 된 것은 코바코 미디어랩이 나오면서 SBS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는 140개 정도로 전년도보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개호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내용인데 그동안은 주로 수도권 위주의 기업이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의 기업들이 많이 선정되도록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호준 위원 저번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쪼록 저번의 그런 논란의 아픔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방송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감사합니다.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장님, 다양한 여러 분과의 논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분들이 누구인가요? 그중에 한 분만 얘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계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가 아시다시피 법원에 있다 왔기 때

문에 그렇게 사회 각계각층의 또는 방송계의 다양한 분들을 알지는 못합니다라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분들한테……

○**최민희 위원** 그것 아까 하신 말씀이고요.

김재홍 위원님, 그 다양한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짐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라는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처음으로 이인호 교수를 후보로 말씀하실 때에 배경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충분히 토론하지 않고 그날 당일 날 의결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상임위원 두 사람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곳에서부터 요청이 온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희 위원** 고삼석 위원님, 피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급하게 의결하고 그다음 날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예, 저희가 의결하고 그다음 날 바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 피할 수 없는 곳과 같은 것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추천을 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들은 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께서 잘 아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피할 수 없는 곳이 어디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썄, 피할 수 없는 곳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어쨌든 이인호 이사장의 발언 때문에 그리고 그런 편협한 역사관을 계속 강연하시겠다는 태도 때문에 계속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건국 60년’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이인호 이사장님과 같은 역사관으로 책자를 문광부가 만들라고 했었어요. 그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구절이 들어갔고 이 구절 때문에 광복회가 건국훈장을 모두 국가에 반납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인촌 장관이 광복회를 찾아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거의 사과를 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대일항쟁기에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임시정부와 애국선열들의 숭고

한 희생이 대한민국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김구선생님은 대한민국 건립의 공로자라는 거잖아요, 건국훈장도 받으셨고?

그래서 저는 KBS 이사장이 이런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앞으로 그런 종류의 강연을 이사장을 하는 동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은 이사장께서 알아서 주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위원** 진일보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이인호 이사장께서 관용차를 타시는데요. 개념이 없으세요. 개념이 없으셔서 주말에도 타시고 개인적인 강연 가실 때도 타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EBS의 이춘호 이사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량 사적 사용 때문에 감사원 지적 받으신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EBS에 1억 원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인호 이사장님은 임명되신 지 한 달 남짓인데 벌써 스무 번 이상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계속 이렇게 하다가 KBS도 또 똑같이 감사원으로부터 비상임 이사장의 차량 사적 사용으로 지적받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난번에 KBS 국감 때 이제 주말에 사용 안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시다.

○**최민희 위원** 비상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적인 데만 이 차량을 쓰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KBS가 이와 관련한 내규가 없대요. EBS는 기준이 있는데도 어긴 거고,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KBS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준도 없으니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닌데 KBS하고 협조해서 그런 내규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다.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미디어랩 용역 주셔 가지고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다시 한 번만……

○최원식 **위원** 방송광고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용역 줬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오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지상파 광고 총량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식 **위원** 아니, 총량제가 아니라 미디어랩……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 OBS 미디어랩 관련한 것……

○최원식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것은 11월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서 기득권이 크게 변동되지 않게 그냥 대충 조정할 것이라는 그런 불행한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부터 많이 지적을 했지만 지역방송이 제대로 존립하려면 상당히 그 부분 생태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제작률이 높고 수중계가 없는 OBS 같은 경우를 많이 고려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위원장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최원식 **위원** 이인호 이사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증언 들어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직접은, 다른 일 뒤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못 들었습니다만……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법통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니라는 취지의 대답이었고, 임시정부와 지금 정부가 정치적인 맥락의 연관성이나 영향성은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통이라는 표현은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헌법전문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헌법에……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법률가니까 헌법전문도 헌법의 일부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인호 이사장님의 사고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역사관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학자로서는 아주 명석할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 특히 공적 수장으로서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표현하거나,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이런 것을 발설하시면 계속 논쟁이 되고 오히려 조직과 공동체를 해할 것이기 때문에 통신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리고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계셨으니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탈세 형사사건에 회사자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배임과 횡령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기억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렇다면 이춘호 이사장이, EBS 내부 규정에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못 쓰게 되어 있는 것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1억 원 정도 사적인 용도로 쓰면 이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뭐 법률적인 평가로는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고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는? 여지가 있으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부분……

○최원식 **위원** 미리 변론하지 마십시오.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취임해서 규정을 숙지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밝힌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법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의 촉구를 했기 때문에……

○**최원식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그것은 어영부영 권한을 넘기면서 국민의 세금 1억을 내동댕이치는 권한의 방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욕을 먹는 거예요. 먼저 그럴 개연성이 있으면 고발하셔서…… 그리고 지금 최소한 형사 고발이 아니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물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도 자꾸 감사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그런 결변상 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원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소신을 묻습니다. 위원장님 사적인 용도로 써서 1억 손해 봤으면 위원장이 물어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물어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EBS 이사장님은 상황이 다릅니까?

그렇게 서로를 용인하고 감싸니까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1억 원이면 얼마나 큰돈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계속 촉구를 하는데 다 방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라도 나서셔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감사원 안 했다, 솔직히 법과 양심에 비추어서 위원장님은 이것 형사 사건 말았으면 유죄를 선고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민사 사건 말았으면 이것 받으라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일관되게 행위를 하셔야지요. 그냥 이것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양심 있게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위원장님, 이통사 및 포털 등 전기통신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하고 통신감청 협조 현황을 봤더니 수천 건이 돼요. 그런데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청은 완료된 내용이 아닌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의미한다’ 이게 있더라고요, 판례에.

그런데 이번에 이통사, 포털, 카톡 같은 SNS가 감청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 이 판례에 위반된 경우는 없나요? 위반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판례의 객관적인 문구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홍의락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한 점검 및 조치사항은 없었다고, 그래지니까 지금 어떤 조치사항도 없는데요. 대법원 판례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상 감청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방통법 11조2항에 보면 방통위는 조사 관련 사무에 있어서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조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개인정보 보호 윤리에 관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며 업체가 협조 안 하면 열쇠공을 불러서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카톡에는 감청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감청하려면 감청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이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이 될 만한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아니고 통신비밀 보호의 문제인데요.

○**홍의락 위원** 예, 통신비밀 보호……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통신비밀 보호 부분은 미래부에서 관장하는 업무여 가지고 제가……

○**홍의락 위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방통위원장으로 말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그 집행 상황 같은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리고 방문진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홍의락 위원** 오늘 계속 우리가 이인호 KBS 이사장님, EBS 이춘호 이사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문진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3월 22부터 8월 22일까지 총 218건에 총 2800만 원인데요. 휴일, 공휴일 이렇게 쓰신 것이 26건에 286만 원이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만큼 안 될 텐데……

○**홍의락 위원** 하여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보면……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너덧 건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26건에 286만 원인데, 3월 23일 날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 미라마에 34만 원, 뭐 어린이날 9만 9000원, 추석연휴에는 두 번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랜드힐튼호텔 13만 5000원, 콘래드서울호텔 24만 원, 개천절 식당에서 41만 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 뭐 물어보니까 업무하시느라고 누구 만났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업무추진비 카드에 그린카드가 아니고 일반 법인카드 쓰시네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아니, 그……

○**홍의락 위원** 방문진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린카드 왜 안 쓰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제가 그린카드 같이 썼는데요.

○**홍의락 위원** 여기 보면 그린카드를 안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아니, 우리가 내규가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의락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추진비 이렇게 쓰신 것,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저는 뭐 제가 금액의 상한도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300

만 원인데 한 절반쯤 조금 더 쓴 것 같고요. 또 금년에는 더 적게 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뭐 거리낌이 없다고 자부하는데요.

○**홍의락 위원**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

그러면 제가 또 추가 내용을 의원실에 다시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인정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잘하셨으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하시겠네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지요, 그렇다면요.

○**홍의락 위원** 예, 그래 보시고.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런데 우선 공휴일에 제가 26건이라는 게 좀……

○**홍의락 위원** 이걸 저희가 다 분석했는데, 지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제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 말씀은 한 3건쯤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의락 위원** 아니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EBS, 방문진, KBS 다 이사장님들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인정을 안 하시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유승희입니다.

MBC가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해체하는 것이 그냥 단 한 조적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MBC 방송국이 공영방송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방송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방송의 목적인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MBC 교양 프로그램인 ‘인간시대’, ‘다큐멘터리 사랑’,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이런 대작들은 시청률 20%를 넘었습니다. 그리

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그동안 MBC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C를 지탱해 준 하나의 중요한 힘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묵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건지 이사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아까 말씀 올린 것 같이 제가 조직 개편을 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것이 MBC가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입니다. 우리가 보고사항이 있고 또 우리 의결사항이 있고……

○유승희 위원 아니, 보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신 건데, 지금 PD연합회 성명서를 보면 이번 조직개편이 파업에 주도적으로 나선 교양 PD들을 공중분해 시키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MBC 상암 신사옥 로비에도 그렇고 여기 저기 걸려 있는 현판을 보면 ‘음수사원(飲水思源) 굴정지인(掘井之人)’ 아시지요, 이 뜻을?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의 고마움을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 MBC한테는 이게 효도한 부서거든요, 이 교양제작국이.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교양제작국을 없애 버린다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적인 목표, 그리고 특히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사회성이 깊고 그다음에 휴머니즘적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위로도 얻고 젊은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MBC가 그동안 민영화의 음모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샀는데, 혹시 그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민영화 음모, 민영화는 지난번에 최민희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꺼내서 가지고 그랬던 건데……

○유승희 위원 지금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이 있고……

이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방문진이 70% 지분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살금살금 뭔가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이런 꿈수가 아니냐……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거는 금시초문이세요? 어쨌든 지간에 지금 MBC를 먹여 살린 이런 교양 시사 프로그램의 은덕을 발로 차는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러니까 민영화 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지요. 없고, 국회에서 하시거나 이러면 몰라도 MBC 자체는 할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저는……

○유승희 위원 그때 MBC랑 방문진하고 그런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게 다 녹음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러면 제가 오기 전인데 그것은……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민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공영 방송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방송의 목적성을 포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MBC를 한국판 폭스로 만들 겁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MBC가 끝없이 망가지는 것이 우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지난 22일 뿐만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교양제작국의 재편성, 존경하는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승희 위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장이 책임 부분이 있는 건데?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보고사항에 불과한데……

○유승희 위원 무슨 보고사항에 불과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또 제가 들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어도 그걸 여기서 지금, 제 혼자 생각밖에 안 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우선 이사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이 교양제작국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앞으로 못 보게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것은 각자 생각이 다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주말이나 한번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그 정도는 제가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사장께서 이거 확실하게 책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고해 주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보고사항인 걸 제가 강제로 이걸 그렇게 못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꾸, 국회법을 따지는데 반대로 MBC 분들이 저보고 그렇게 시비하면 제가 또 말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잘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승희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마저 하고 안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EBS 수신료 배분을 자꾸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연하게 수신료를 올려야 된 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배분을 자체를 올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EBS 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 시고요.

단통법에 있어서는 분리공시 관련해서 규개위 에서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방통위가 대응 을 적절하게 잘 못 했다,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최경환 부총리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라고 하 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최경환 부총리의 힘이 너무 세서 못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후자 부분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로서는 차관회의와 장관회의 그다음에 규개위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분리공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했었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박효종 상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나 우상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음란사이트가 버젓이 창에 뜨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또 아까 장병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부 사이트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저희들이 굉장하……

○**전병헌 위원** 동의를 하시면, 저는 그래도…… 박효종 위원장께서 서울대 교수 출신이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퇴임했습니다.

○**전병헌 위원** 서울대에서 정년퇴임하셨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전병헌 위원** 서울대에서 정년퇴임을 하셨으면, 어찌됐든 이념적 편향성을 떠나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성의 눈으로 그리고 양식의 그리고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유해물과 음란물 이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방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주 공감합니다.

○**전병헌 위원** 공감하시니까 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방심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단호할 때는 단호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 지나치게 단호하고, 그래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쪽에는 단호하면서 이와 같이 유해물과 음란물,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가 방심위의 위상을 계속 깎게 되고 방심위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전 위원님의 말씀 고건 제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성문 사장이요, 오늘 안심이 되십니까? 심심하십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광성문** 아닙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전병헌 위원** 지난번에 사장을 공모를 할 때 친박 의원들과 상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친박 의원들이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광성문** 주변에 아 는……

○**전병헌 위원** 주변의 어떤 분들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서슴없이 밝혔잖아요. 친박 의원들하고 의논을 했다고 그리고 본인이

친박임을 세상에 그리고 특히 심사위원들한테 엄청나게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 자기소개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친박 의원들하고 의논했습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곽성문** 거명을 하기가 좀……

○전병헌 위원 말씀해 보세요, 여기 국정감사장에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데. 말씀해 보세요. 답변 거부입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곽성문**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병헌 위원 이해 못 하겠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과, 호가호위 있잖아요? 저는 자기소개서가 아주 전형적인 호가호위형 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께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한테 오히려 커다란 누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그와 같은 자기소개서와 발언으로 대통령께도 상당히 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곽성문**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곽성문** 제가 임명이 됐으니까 또 일을 시작한 것도 있고 열심히 사심 없이 일하시는 걸 좀 지켜봐 주시고 추후에 한번 평가를……

○전병헌 위원 소위 방송광고공사 사장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특히 방송은 언론의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분명하고 공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곽성문** 잘 알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마지막으로 방통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호 이사가 KBS 경력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22년 전의 잠시의 경력이고 사실은 방송과의 상관성과 KBS의 유관성에서 잊혀졌던 분이고 역사학자로서 또는 러시아 대사로서 기억되는 분인데 그분을 갑작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더더욱이 그분도 이인호 이사께서도 위원장을 전혀 모르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을 끌어들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면 KBS를 잘 아는 분보다는, 과거의 이길영 이사장님께서 KBS 출신으로서 원만치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KBS 출신이 전혀 아니신 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KBS 이사를 지내신 분 중에서 사회 원로로서 어느 정도 신망이 있는 분을 고른다고 한 것입니다.

○전병헌 위원 그런데……
마이크를 좀 주시지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환영 사장이 8월 27일 날 사임하고 8월 29일 날 야당 측 방통위원에게 알렸어요. 사실상 불과 하루 만에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최성준 위원장께서 널리 인재풀을 통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대단히 오차가 있는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못할 그 어떤 손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좌우했음을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이인호 이사가 이미 선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곤혹스럽고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국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한 최종적인 결과는……

이번 KBS 국감에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을 이제 내릴게요.

.....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인호 이사장께서 아무리 역사학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법통의 근원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사실상 부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당일 날도 지적을 했고 오늘 존경하는 최원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를 사실상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헌법질서에 반하는 반헌법적 인사를 잘못 추천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사 추천권자인 방통위가 해임건의안으로 의결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들께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의락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주세요.

○**위원장 홍문종** 30초요?

예, 홍의락 위원님 하십시오.

○**홍의락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방문진 이사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오늘 교양제작국 해체했지 않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아직 결정을 안한 걸로 제가 압니다.

○**홍의락 위원** 결정 안 했습니까?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보고받은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사무처장님이……

○**홍의락 위원** 보고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방문진 이사장님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러니까 정식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시다.

○**홍의락 위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결정된 게 아닙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렇습니까? 보고를 정식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받아야 되지요. 보고사항의 보고는 받아야 되지요.

○**홍의락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홍의락 위원** 보고받은 적이 없고 소문으로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처장님으로부터 듣고 보니까, 하려면 우리한테 보고사항으로 명시돼 있고 MBC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회한 적도 없습니다.

○**홍의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홍문종** 1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자꾸 강조해서 그렇긴 한데 방문진 이사장이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시지요? 그리고 또 국민대 총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사장께서 이사회에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폄훼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사회에 권한은 분명하게 MBC를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MBC가 지금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 포기선언이랑 똑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MBC가 공익성과 공정성을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있는 그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 정책은 반드시 막아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시청자의 시청권한이 있습니다. 시청권한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교양제작국 해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시면 됩니다.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사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나약해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게 아니고,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구분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해 보니까. 또 이것은 보고사항을 하면 저한테 보고 및, 아마 이사회 보고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협의사항 같은 것도 협의나 의결이나 차이가 엄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돼 있는 걸 제가 임의로 보고사항을 협의사항으로 한다거나 또는 의결사항으로 한다 그것은 제 권한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나 또는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유념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MBC하고 잘 상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은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제가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MBC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하지요. 더욱이나 우상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별책을 내놓으셔서 고마운데……

○**위원장 홍문종** 잘 검토를 하십시오. 잘 검토하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210명 규모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을 구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통위의 역할과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원만하게 도출해 내야 하는 만큼 비록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과 환경속에서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저, 이인호 이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들은 거대로 그날 말씀하신 걸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구 선생님을 독립운동가로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정신적 법통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홍의락 위원** 그건 말 안 했어요.

○**최민희 위원** 아니, ‘정신적으로 인정한다’, 법통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최원식 위원** 법통은 안 했어요, 법통은 안 했어요.

○**홍의락 위원** 법통은 안 했다고.

○**전병헌 위원** 법통은 아니고……

○**위원장 홍문종** 예? 법통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어요.

○**최원식 위원** 예, 정신적으로 인정한다……

○**최민희 위원**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법통은 아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야. 틀리는 말이에요, 그건. 법통 인정을 하지 않고, 속기록 보면……

○**전병헌 위원** 그러면 속기록 갖다가 확인해서 아니면 위원장님 물러나시겠어요?

(웃음소리)

○**유승희 위원** 아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신

적으로’ 얘기했는데 ‘정신적으로’라고 하는 말과 ‘법통적’인 얘기는 다른 말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아니, 실질적인 법통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법통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니까요.

○**최민희 위원** 법통은 안 했어요.

○**전병헌 위원** 법통은 아니라고, 법통은.

○**유승희 위원** 법통이라는 얘기 안 하고요 추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신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홍문종** 어쨌든 제가 보기에요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인호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는 이인호 이사장님하고 저희하고 역사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민희 위원** 아니, 하기 싫어요.

○**유승희 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갖고 와서 여기서 보고 얘기하자고요.

○**위원장 홍문종** 알았습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홍문종** 아니,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병헌 위원** 아니, 위원장께서 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다가 마지막 화룡점정을 엉망으로 이렇게……

(웃음소리)

○**위원장 홍문종**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인호 이사장님이…… 이 이인호 이사장님한테 우리가 그날 다 질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임건의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승희 위원** 해임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분명하게 지금 헌법 위배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석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홍문종** 속기록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적인 법통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데요?

○**최민희 위원** 법통은 인정 못 하고 정신사적으로 인정한다……

○**유승희 위원** 정신 ‘사’도 안 했어, ‘정신적으로’.

○위원장 **홍문중** 질의 도중에 이군현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송호창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류지영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정호준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전병헌 위원님, 문병호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배덕광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방통위를 비롯한 해당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수감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기관에 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21시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22인)

강길부	권은희	김재경	류지영
문병호	민병주	배덕광	송호창
심학봉	우상호	유승희	이개호
이군현	이재영	장병완	전병헌
정호준	조해진	최민희	최원식
홍문중	홍의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전문위원	정창모

○피감사기관 참석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부위원장	허원제
상임위원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기획조정실장	라봉하
방송정책국장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방송기반국장	김영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효중
기획조정실장	최옥술
방송심의국장	이종대
통신심의국장	박행석

권익보호국장	박우귀
조사연구실장	조규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문환
사무처장	임무혁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김동수
편성본부장	권순우
T V 본부장	이응진
기술본부장	김석두
시청자본부장	김성오
정책기획본부장	서재석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신용섭
학교교육본부장	김봉선
콘텐츠사업본부장	손홍호
정책기획센터장	정현영
콘텐츠기획센터장	류동순
경영지원센터장	김동형
이사회사무국장	남이호
감사실장	이승준
대외협력국장	이승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곽성문
기획조정실장	신성성